

---

# 2019회계연도 가평군 결산검사의견서

---

수신: 가 평 군 수

2020. 4. 18.

2019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2020년 3월 30일 ~ 4월 18일 (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배 영 식(가평군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신 명 철(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장 상 용(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정 진 환(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홍 인 수(세무사)

## 가평군결산검사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가평군수 귀하

2020년 4월 18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가평군 의회로부터 가평군 2019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20일간)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9회계연도 가평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가평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가평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서(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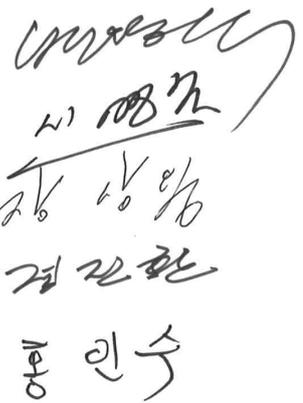
대표위원 배영식

위원 신명철

위원 장상용

위원 정진환

위원 홍인수



Handwritten signatures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배영식, 신명철, 장상용, 정진환, 홍인수.

# 목 차

<b>I .</b>	<b>결산검사 경과</b>	<b>1</b>
------------	----------------	----------

<b>II .</b>	<b>결산검사 총괄현황</b>	<b>2</b>
-------------	------------------	----------

①	가평균 재정여건 .....	2
---	----------------	---

②	세입·세출 결산 .....	5
---	----------------	---

③	기금 결산 .....	16
---	-------------	----

④	재무제표의 결산 .....	17
---	----------------	----

⑤	성과보고서 .....	19
---	-------------	----

⑥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20
---	--------------------	----

<b>III .</b>	<b>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b>	<b>23</b>
--------------	-----------------------	-----------

<b>IV .</b>	<b>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b>	<b>41</b>
-------------	--------------------------------	-----------

### 1. 결산검사의 방향

-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행정안전부)을 근거로 작성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 2019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의회승인으로 확정된 세출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금액 내에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2. 결산검사 기간: 2020. 3. 30. ~ 4. 18.(20일간)

### 3. 결산검사 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배 영 식	결산총괄, 결산개요	
위 원	신 명 철	세입결산, 금고의 결산	
위 원	장 상 용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위 원	정 진 환	세출결산, 결산서첨부서류	
위 원	홍 인 수	특별회계, 기금결산	

### 4. 결산검사 사항

-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기금결산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결산

### 5. 결산검사 진행

- 세입·세출결산서 위주로 검사
-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원칙으로 제 장부 및 지출증빙서 등을 열람
- 결산검사 중 의문사항은 서류제출 요구
- 쟁점사항은 위원의 협의를 거쳐 조정

##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 1. 가평균 재정여건

####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의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포함)의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세 입	596,722,745	596,534,468	682,929,297	700,171,025	745,248,820
	세 출	422,935,049	392,615,647	462,964,521	494,005,447	505,977,966
	결산상잉여금	173,787,696	203,918,821	219,964,776	206,165,578	239,270,854
일반회계	세 입	445,507,238	455,758,336	528,840,210	559,162,177	606,284,479
	세 출	333,373,475	314,717,846	369,414,872	422,511,551	440,919,993
	결산상잉여금	112,133,763	141,040,490	159,425,338	136,650,626	165,364,486
특별회계	세 입	103,142,199	87,294,937	95,658,857	93,336,797	85,557,749
	세 출	87,213,841	76,213,093	78,179,704	70,595,469	62,396,588
	결산상잉여금	15,928,358	11,081,844	17,479,153	22,741,328	23,161,161
기 금	세 입	48,073,308	53,481,195	58,430,230	47,672,051	53,406,592
	세 출	2,347,733	1,684,708	15,369,945	898,427	2,661,385
	결산상잉여금	45,725,575	51,796,487	43,060,285	46,773,624	50,745,207

- 2019회계연도 재정규모는 745,248,820천원으로 2018회계연도 대비 45,077,795천원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의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7,972천원이다.

※ 기금의 결산상잉여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을 제외한 결산상잉여금은 26,481,139천원 임(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9종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24,264,068천원 임)

○ 가평군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 계	5,700,000	18,000,000	17,200,000	16,381,250	14,247,150	
일 반 회 계	5,400,000	17,800,000	17,200,000	16,381,250	14,247,150	
공 채	-	-	-	-	-	
차 입 금	5,400,000	17,800,000	17,200,000	16,381,250	14,247,150	
채무부담행위	-	-	-	-	-	
공기업특별회계	300,000	200,000	-	-	-	

- 가평군 채무는 2015년도 조기상환으로 채무가 감소하였다가 2016년도 「가평뮤직빌리지사업」에 8,000,000천원, 「가평·청평·상천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5,000,000천원을 차입함으로써 증가되었고,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채무를 주민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채무’는 224천원으로 2018회계연도 보다 36천원이 감소하였다.

**2. 재정건전성**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지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 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판 단 기 준		가 평 군 지 표
			주 의	심 각(위 기)	
채무관리	① 예산대비 채무비율	$\frac{\text{지방채무잔액}}{\text{총예산}}$	25% 초과	40% 초과	2.7%
	② 채무상환 부담률	$\frac{\text{지방채무상환액}}{\text{일반재원}}$	12% 초과	17% 초과	0.7%
세입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 현황	$\frac{\text{해당연도 평균 월별 징수액}}{\text{최근 3년 평균 월별 징수액}}$	50% 미만	0% 미만	100.5%
자금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frac{\text{해당연도 평균 분기말 잔고}}{\text{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 미만	10% 미만	108.4%
공 기업	⑤ 공기업 부채비율	$\frac{\text{부채}}{\text{순자산}}$	400% 초과	600% 초과	0.41%
	⑥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상수도) 0.79% (하수도) 0.02%

- 가평균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준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7%, 채무상환 부담률은 0.7%, 지방세 징수액 현황은 100.5%, 금고잔액 현황 108.4%, 공기업 부채비율은 0.41%로서 가평균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019년도 본예산 기준)

$$- \text{재정자립도} = 18.33 \% \left[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right]$$

※ 지방세: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 과년도 수입

☞ 재정자립도는 동종 자치단체(전국 군 평균 11.63%)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text{재정자주도} = 64.68 \% \left[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right]$$

※ 자체수입: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조금

☞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등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동종 자치단체(전국 군 평균 58.71%) 보다 재정자주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세입·세출 결산

### 1. 총 괄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잉 여 금(A-B)	비 고
합 계	674,878,158	691,842,228	503,316,581	188,525,647	
일 반 회 계	589,963,119	606,284,479	440,919,993	165,364,486	
특 별 회 계	84,915,039	85,557,749	62,396,588	23,161,161	
공기업특별회계	66,156,696	66,018,935	47,871,954	18,146,981	
기타특별회계	18,758,343	19,538,814	14,524,634	5,014,180	

구 분	현 년 도 채무상환	이월액					비 고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	32,523,673 (33,373)	6,502,941	64,246,162 (1,282,590)	6,791,252	78,461,619	
일 반 회 계	-	28,167,981 (33,373)	3,993,151	61,022,679 (1,282,590)	6,419,223	65,761,453	
특 별 회 계	-	4,355,692	2,509,790	3,223,483	372,029	12,700,166	
공기업특별회계	-	4,079,064	2,509,790	3,180,000	-	8,378,126	
기타특별회계	-	276,628	-	43,483	372,029	4,322,040	

※ ( )는 자금 없는 이월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91,842,228천원으로 예산현액 674,878,158천원보다 16,964,070천원이 더 수납되었다.
-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3%인 503,316,581천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88,525,647천원이다. 이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 32,523,672천원, 사고이월 6,502,941천원, 계속비이월 64,246,162천원, 보조금집행잔액 6,791,252천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8,461,619천원이다.

※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현연도 채무상환액은 없다.

- 명시·사고 및 계속비 이월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 1) 세입결산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 예산현액 674,878,15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1,842,228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5%이며, 징수결정액 706,722,000천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9%이다.

###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다/가	다/나
합 계	674,878,158	706,721,999	691,842,228	1,980,275	12,899,496	102.5	97.9
전년도	640,085,730	667,724,311	652,498,974	2,182,208	13,043,129	101.9	97.7
일반회계	589,963,119	619,681,451	606,284,479	1,979,883	11,417,089	102.8	97.8
전년도	548,786,777	573,531,230	559,162,177	2,176,406	12,192,647	101.9	97.5
특별회계	84,915,039	87,040,548	85,557,749	392	1,482,407	100.8	98.3
전년도	91,298,953	94,193,081	93,336,797	5,802	850,482	102.2	99.1

- 수납액은 전년대비 39,343,254천원(6%)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은 전년대비 201,933천원(9%)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43,633천원(1%) 감소하였다.

## 2) 세출결산

-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예산액은 577,611,712천원으로 전년도이월액 97,266,446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74,878,158천원이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인 503,316,581천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의 15%인 104,588,739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인 66,972,838천원이다.

### 【예산현액 대비 세출총괄】

(단위: 천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674,878,158	503,316,581	104,588,739	66,972,838	
전년도	640,085,730	493,107,020	97,266,446	49,712,264	
일반회계	589,963,119	440,919,993	94,499,774	54,543,352	
전년도	548,786,777	422,511,551	89,032,841	37,242,385	
특별회계	84,915,039	62,396,588	10,088,965	12,429,486	
전년도	91,298,953	70,595,469	8,233,605	12,469,879	

## 2. 일반회계

### 1) 세입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다음과 같고, 세입 결산액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과 목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결손처분 등)	미수납액 (다음연도이월액)	비중 (수납액 기준 %)
합 계	589,963,119	619,681,451	606,284,479	1,979,883	11,417,089	100
전년도	548,786,777	573,531,230	559,162,177	2,176,406	12,192,647	100
지방세수입	54,950,000	64,460,115	56,374,784	1,262,394	6,822,937	9.3
전년도	52,400,000	63,650,733	54,786,458	1,128,529	7,735,746	9.8
세외수입	20,072,256	29,031,036	23,719,395	717,489	4,594,152	3.9
전년도	20,081,324	26,729,053	21,224,275	1,047,877	4,456,901	3.8
지방교부세	165,220,917	171,369,590	171,369,590	-	-	28.3
전년도	142,868,217	144,218,408	144,218,408	-	-	25.8
조정교부금등	80,225,000	86,798,113	86,798,113	-	-	10.4
전년도	52,269,000	58,362,559	58,362,559	-	-	10.4
보조금	132,483,949	131,011,600	131,011,600	-	-	21.6
전년도	112,222,899	111,705,469	111,705,469	-	-	2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7,010,997	137,010,997	137,010,997	-	-	22.6
전년도	168,945,337	168,865,008	168,865,008	-	-	30.2
결산확인액	589,963,119	619,681,451	606,284,479	1,979,883	11,417,089	
차액	-	-	-	-	-	

- 예산현액은 589,963,119천원으로 전년대비 41,176,342(7.5%)증가하였고, 징수 결정액은 619,681,451천원으로 전년대비 46,150,221천원(8%)증가하였다.
-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7,122,302천원 많은 606,284,479천원(8.4%)이 수납되었으며, 증가된 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27,151,182천원(18.8%), 조정교부금 등 28,435,554천원(48.7%) 등이다.
- 재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총 수납액 606,284,479천원 중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지방교부세 28.3%, 보조금 21.6%, 조정교부금 등 10.4%, 지방세수입 9.3%, 세외수입 3.9%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 불납결손액은 1,979,883천원으로 주된 결손처분 사유로는 평가액 부족 679,824천원(34.3%), 무재산 666,856천원(33.7%), 시효소멸 380,521천원(19.2%) 등이다.

○ 세목별 세입결산액은 다음과 같다.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589,963,119	619,681,451	606,284,479	1,979,883	11,417,089
지방세	소 계	54,950,000	64,460,115	56,374,784	1,262,394	6,822,937
	주민세	1,270,000	1,370,165	1,303,493	10	66,662
	재산세	23,000,000	25,413,605	24,445,614	53	967,938
	자동차세	8,900,000	9,731,468	8,947,006	-	784,462
	담배소비세	7,000,000	6,859,950	6,859,950	-	-
	지방소득세	14,000,000	15,073,391	13,723,228	43,826	1,306,337
	지난년도수입	780,000	6,011,536	1,095,493	1,218,505	3,697,538
세외수입	소 계	20,072,256	29,031,036	23,719,395	717,489	4,594,152
	경상적세외수입	12,036,711	13,012,331	12,674,174	60	338,097
	재산임대수입	345,567	519,629	485,258	-	34,371
	사용료수입	4,433,992	4,642,547	4,351,799	60	290,688
	수수료수입	2,266,118	2,517,928	2,506,123	-	11,805
	사업수입	613,462	598,955	598,771	-	184
	징수교부금수입	2,346,224	2,272,854	2,272,853	-	-
	이자수입	2,031,348	2,460,418	2,459,370	-	1,049
	임시적세외수입	8,035,545	16,018,705	11,045,221	717,429	4,256,055
	재산매각수입	400,000	342,392	342,392	-	-
	부담금	320,000	491,294	272,986	-	218,308
	과징금및과태료	1,205,330	2,094,349	1,157,169	59,478	877,702
	기타수입	5,490,215	8,659,439	8,514,790	-	144,649
	지난연도수입	620,000	4,431,231	757,884	657,951	3,015,396
	지방교부세	165,220,917	171,369,590	171,369,590	-	-
조정교부금 등	80,225,000	86,798,113	86,798,113	-	-	
보조금	132,483,949	131,011,600	131,011,600	-	-	
국비보조금	97,300,473	96,848,241	96,848,241	-	-	
도비보조금	35,183,476	34,163,359	34,163,359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7,010,997	137,010,997	137,010,997	-	-	

○ 지난년도 대비 세목별 세입결산액의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다.

**【세목별 세입(수납액) 증감현황】**

(단위 : 천원)

세목별	연도별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	비고
합	계	606,284,479	559,162,177	47,122,302	8.4	
지 방 세	계	56,374,784	54,786,458	1,588,326	2.9	
	주 민 세	1,303,493	1,193,151	110,342	9.2	
	재 산 세	24,445,614	22,703,555	1,742,059	7.7	
	자 동 차 세	8,947,006	6,807,915	2,139,091	31.4	
	담 배 소 비 세	6,859,950	7,069,547	△209,597	△3.0	
	지 방 소 득 세	13,723,228	16,427,681	△2,704,453	△16.5	
	지 난 년 도 수 입	1,095,493	584,609	510,884	87.4	
세 외 수 입	계	23,719,395	21,224,275	2,495,120	11.8	
	경 상 적 세 외 수 입	12,674,174	12,068,322	605,852	5.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1,045,221	9,155,953	1,889,268	20.6	
지 방 교 부 세		171,369,590	144,218,408	27,151,182	18.8	
조 정 교 부 금 등		86,798,113	58,362,559	28,435,554	48.7	
보 조 금	계	131,011,600	111,705,469	19,306,131	17.3	
	국 비 보 조 금	96,848,241	72,443,818	24,404,423	33.7	
	도 비 보 조 금	34,163,359	39,261,651	△5,098,292	△13.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37,010,997	168,865,008	△31,854,011	△18.9	

- 지방세는 자동차세 주행분(운수업체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지난년도 수입 중 과오납환급액이 전년도 2,280백만원에서 현년도 2,094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체납관리단 운영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액이 증가하였다.
- 반면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징수액이 전년도 7,848백만원에서 현년도 5,083백만원으로 약 27억 원 감소하였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자가 늘어나고, 세율이 적은 전자담배의 소비가 확산되어 세입이 감소하였다.

- 세입결산서의 수납액과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한 결과 79,025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지방세를 현물(토지)로 징수한 것에 대한 차액이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구 분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액	차 액	사 유
일 반 회 계	606,284,479	606,205,454	79,025	지방세 현물(토지) 징수 ※ 공유재산 증가

**2) 세출**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고, 세출 결산액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나/가)	비고
2019년	500,930,278	589,963,119	440,919,993	94,499,774	54,543,352	74.7	
2018년	441,626,731	548,786,777	422,511,551	89,032,841	37,242,385	76.9	
증감액 (%)	59,303,547 (13.4)	41,176,342 (7.5)	18,408,442 (4.4)	5,466,933 (6.1)	17,300,967 (46.5)		
결산확인액	500,930,278	589,963,119	440,919,993	94,499,774	54,543,352		
차 액	-	-	-	-	-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500,930,278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89,032,841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89,963,119천원이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4.7%인 440,919,993천원이고 94,499,774천원(예산현액 대비 16%)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543,352천원(예산현액 대비 9.2%)으로 주로 사업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전년대비 17,300,967천원(46.5%) 증가하였다.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과 금고출납계산서와의 차액은 없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액	차 액	비고
일 반 회 계	440,919,993	440,919,993	-	

○ 일반회계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이월내역】**

(단위 : 천원, 건, %)

구 분	2019년(A)		2018년(B)		차 액(C=A-B)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증감율
합 계	245	94,499,774	220	89,032,841	25	5,466,933	6.1
명 시 이 월	117	28,201,354	120	33,258,541	△3	△5,057,187	△15.2
사 고 이 월	39	3,993,151	28	6,203,498	11	△2,210,347	△35.6
계속비이월	89	62,305,269	72	49,570,802	17	12,734,467	25.7

- 총 이월사업비는 245건 94,499,774천원으로 명시이월 117건 28,201,354천원, 사고이월 39건 3,993,151천원, 계속비이월 89건 62,305,269천원으로 전년대비 6.1%가 증가하였다.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지출액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점유율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89,963,119	440,919,993	74.7	100	422,511,551	18,408,442	104.4
일 반 공 공 행 정	49,081,951	44,851,344	91.4	8.6	36,238,160	8,613,184	123.8
공공질서 및 안전	6,823,506	5,560,624	81.5	0.9	3,969,147	1,591,477	140.1
교 육	8,484,263	8,082,183	95.3	1.9	8,098,611	△16,428	99.8
문 화 및 관 광	76,358,289	44,816,458	58.7	10.7	45,391,282	△574,824	98.7
환 경 보 호	33,810,039	29,379,105	86.9	7.1	29,993,515	△614,410	98.0
사 회 복 지	139,722,938	122,162,080	87.4	24.0	101,326,241	20,835,839	120.6
보 건	7,111,786	6,188,048	87.0	1.4	6,068,663	119,385	102.0
농 립 해 양 수 산	54,251,921	43,549,516	80.3	9.2	38,834,388	4,715,128	112.1
산 업 · 중 소 기 업	10,249,059	5,829,431	56.9	2.0	8,349,951	△2,520,520	69.8
수 송 및 교 통	38,060,667	24,060,060	63.2	5.6	23,789,157	270,903	101.1
국 토 및 지 역 개 발	79,633,482	49,669,685	62.4	16.2	68,432,573	△18,762,888	72.6
예 비 비	25,297,257	-	-	-	-	-	-
기 타	61,077,961	56,771,459	92.9	12.3	52,019,863	4,751,596	109.1

- 주요 지출분야는 사회복지 122,162,080천원(24%), 국토및지역개발 49,669,685천원(16.2%), 기타 56,771,459천원(12.3%) 등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이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140.1%), 일반공공행정(123.8%), 사회복지(120.6%) 등이다.

### 3.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결산

#### 1) 세입

-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세입 결산액은 다음과 같고, 세입 결산액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미수납액
합	계	84,915,039	87,040,548	85,557,749	392	1,482,407
	전 년 도	91,298,953	94,163,081	93,336,797	5,802	820,482
공	소 계 (2)	66,156,696	67,172,146	66,018,935	392	1,152,819
	전 년 도	63,241,893	64,416,626	63,934,989	5,802	475,835
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159,450	29,861,733	28,845,239	354	1,016,140
	전 년 도	24,850,426	24,966,298	24,708,788	4,832	252,678
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997,246	37,310,413	37,173,696	38	136,679
	전 년 도	38,391,467	39,450,328	39,226,201	970	223,157
기	소 계 (6)	18,758,343	19,868,402	19,538,814	-	329,588
	전 년 도	28,057,060	29,746,455	29,401,808	-	344,647
의	료 기 금	1,078,553	1,085,988	1,085,988	-	-
	전 년 도	1,000,341	1,006,065	1,006,065	-	-
발	전 소 주 변 지 역	1,184,259	1,148,832	1,148,832	-	-
	전 년 도	1,123,221	1,094,545	1,094,545	-	-
공	영 개 발	390,837	1,759,530	1,759,530	-	-
	전 년 도	1,740,679	1,749,900	1,749,900	-	-
주	차 장	922,797	1,192,385	862,797	-	329,588
	전 년 도	304,275	630,259	285,612	-	344,647
수	질 개 선	15,181,897	14,681,667	14,681,667	-	-
	전 년 도	23,588,544	24,968,550	24,968,550	-	-
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	-	-	-	-
	전 년 도	300,000	297,136	297,136	-	-
결 산 확 인 액		84,915,039	87,040,548	85,557,749	392	1,482,407
차 액		-	-	-	-	-

-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3%로인 85,557,749천원으로 전년대비 7,779,048천원(8.3%)이 감소하였다.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661,925천원(80.7%)가 증가한 1,482,407천원으로 미수납의 주요원인은 상·하수도요금, 불법주정차과태료의 미수납액으로 납세자의 납세태만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 세입결산서의 수납액과 금고출납계산서를 대사한 결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액 862,530천원이 발생하였다.

- 그 원인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출납사무 완결기한(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에서 당해연도 12월에 수납되어 가평군 금고에 미입금된 당해연도 세입에 대한 차액이 각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81,881천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80,649천원이 발생하였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의 대사】**

(단위 : 천원)

구	분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 액	차 액	사 유
합	계	85,557,749	84,695,219	862,530	
	공기업특별회계	66,018,935	65,156,405	862,530	
	상수도사업	28,845,239	28,363,358	481,881	· 타 금융기관 수납세입 2019년 회계마감 후 금고 입금액: 481,881천원
	하수도사업	37,173,696	36,793,047	380,649	· 타 금융기관 수납세입 2019년 회계마감 후 금고 입금액: 380,649천원
	기타특별회계	19,538,814	19,538,814	-	

## 2) 세출

-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고, 세출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포함)
합	계	84,915,039	62,396,588	10,088,965	12,429,486
	전 년 도	91,298,953	70,595,469	8,233,605	12,469,879
공	소 계 (2)	66,156,696	47,871,955	9,768,854	8,515,887
	전 년 도	63,241,893	45,889,322	7,793,452	9,559,119
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159,450	16,684,802	7,408,838	6,065,810
	전 년 도	24,850,426	13,393,958	5,154,897	6,301,571
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997,246	31,187,153	2,360,016	2,450,077
	전 년 도	38,391,467	32,495,364	2,638,555	3,257,548
기	소 계 (6)	18,758,343	14,524,633	320,111	3,913,599
	전 년 도	28,057,060	24,706,147	440,153	2,910,760
의	료 기 금	1,078,553	1,022,138	-	56,415
	전 년 도	1,000,341	984,115	-	16,226
발 전	소 주 변 지 역	1,184,259	417,920	-	766,339
	전 년 도	1,123,221	541,393	-	581,828
공	영 개 발	390,837	-	-	390,837
	전 년 도	1,740,679	-	-	1,740,679
주	차 장	922,797	565,748	72,100	284,949
	전 년 도	304,275	220,816	-	83,459
수	질 개 선	15,181,897	12,518,827	248,011	2,415,059
	전 년 도	23,588,544	22,669,784	440,153	478,607
타	장기미 집행대지보상	-	-	-	-
	전 년 도	300,000	290,039	-	9,961
결 산 확 인 액		84,915,039	62,396,588	10,088,965	12,429,486
차 액		-	-	-	-

- 2019년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4,915,039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3.5%인 62,396,588천원이 지출되었다.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47,871,955천원(예산현액 대비 72.4%)을 지출하였고, 9,768,854천원(예산현액 대비 14.8%)은 이월하였으며, 8,515,887천원(예산현액 대비 12.9%)을 불용하였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4,524,633천원(예산현액대비 77.4%)을 지출하였고, 320,111천원(예산현액 대비 1.7%)은 이월하였으며, 3,913,599천원(예산현액 대비 20.9%)을 불용하였다.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과 금고출납계산서와의 차액은 없다.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액	차 액	비 고
특 별 회 계	62,396,588	62,396,588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47,871,955	47,871,955	-	
기 타 특 별 회 계	14,524,633	14,524,633	-	

○ 특별회계의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특별회계 이월내역】**

(단위 : 천원, 건, %)

구 분	2019년(A)		2018년(B)		차 액(C=A-B)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증 감 율
합 계	15	10,088,965	12	8,233,605	3	1,855,360	22.5
명 시 이 월	9	4,355,692	7	7,502,636	2	△3,146,944	△41.9
사 고 이 월	3	2,509,790	3	644,707	-	1,865,083	289.3
계 속 비 이 월	3	3,223,483	2	86,262	1	3,137,221	3636.9

- 총 이월사업비는 15건 10,088,965천원으로 명시이월 9건 4,355,692천원, 사고이월 3건 2,509,790천원, 계속비이월 3건 3,223,483천원으로 전년대비 22.5%가 증가하였다.

**4. 예비비의 결산**

○ 2019회계연도 예비비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일반회계)	1,733,141	1,048,730	264,288	420,123	
관 광 과	관 광 홍 보	10,340	9,820	-	520
세 정 과	체 납 세 징 수	158,725	158,725	-	-
행 복 돌 봄 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지원	9,600	8,900	-	700
환 경 과	멧돼지 ASF 확산방지사업	520,000	255,712	264,288	-
농 업 정 책 과	농 가 소 득 배 가 육 성	21,500	21,500	-	-
	재 해 복 구 피 해 보 상	38,237	25,050	-	13,187
	아 프 리 카 돼 지 열 병 방 역 대 책	550,684	146,738	-	403,946
산 림 과	임 산 물 유통 지 원	1,055	1,052	-	3
도 시 과	가 평 · 북 면 도 시 계 획 도 로 개 설	412,000	410,417	-	1,583
교 통 과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지원	11,000	10,816	-	184

- 2019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0개사업 1,733,141천원으로 체납세 징수, 멧돼지 ASF 확산방지사업,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등 예측 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 지출 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

### 3 기금의 결산

○ 2019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작성)

####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조성액(A+B)
		증감액(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46,773,623	3,971,584	6,632,969	2,661,385	50,745,207
통합관리기금	22,116,919	1,775,570	2,942,308	1,166,738	23,892,489
지방채상환기금	1,006,837	△785,916	217,389	1,003,305	220,921
사회복지기금	7,012,195	75,255	142,199	66,944	7,087,450
문화예술발전기금	1,586,262	5,088	26,634	21,546	1,591,350
식품진흥기금	189,139	△26,127	46,739	72,866	163,012
체육진흥기금	1,058,505	2	18,002	18,000	1,058,507
장학기금	10,166,480	2,264,651	2,467,473	202,822	12,431,131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16,630	92,760	113,789	21,029	309,390
재난관리기금	1,865,443	439,957	515,092	75,135	2,305,400
농업인단체육성기금	1,027,146	4,402	17,402	13,000	1,031,548
옥외광고정비기금	528,067	125,942	125,942	-	654,009

- 2019회계연도 말 가평균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개로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46,773,623천원에 해당연도 조성액 6,632,969천원을 더하고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 2,661,385천원을 공제한 50,745,207천원이다.

※ 2019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을 제외한 기금조성액은 26,481,139천원 임(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9종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24,264,068천원 임)

○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42,474,888	45,725,575	51,796,487	43,060,285	46,773,623	2.4
해당연도 조성액	5,598,420	7,755,620	6,633,743	4,611,765	6,632,969	4.3
해당연도 사용액	2,347,733	1,684,708	15,369,945	898,427	2,661,385	3.2
해당연도말 조성액	45,725,575	51,796,487	43,060,285	46,773,623	50,745,207	2.6

#### 4 재무제표의 결산

○ 가평군의 2019회계연도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18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b>자 산</b>	<b>2,139,609</b>	<b>1,996,858</b>	<b>142,751</b>	<b>7.1</b>
I. 유 동 자 산	221,542	183,581	37,961	20.7
II. 투 자 자 산	4,546	5,880	△1,334	△22.7
III. 일 반 유 형 자 산	137,115	113,973	23,142	20.3
IV. 주 민 편 의 시 설	374,247	351,959	22,288	6.3
V. 사 회 기 반 시 설	1,398,669	1,339,415	59,254	4.4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3,490	2,050	1,440	70.2
<b>부 채</b>	<b>29,847</b>	<b>27,846</b>	<b>2,001</b>	<b>7.2</b>
I. 유 동 부 채	14,416	8,911	5,005	56.2
II. 장 기 차 입 부 채	11,604	15,156	△3,552	△23.4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3,827	3,779	48	1.3
<b>순 자 산</b>	<b>2,109,762</b>	<b>1,969,012</b>	<b>140,750</b>	<b>7.1</b>
I. 고 정 순 자 산	1,899,083	1,790,816	108,267	6.0
II. 특 정 순 자 산	26,844	24,590	2,254	9.2
III. 일 반 순 자 산	183,835	153,606	30,229	19.7

- 2019회계연도 말 가평군의 자산은 2조 1,396억 원으로 전년도 1조 9,968억 원보다 1,427억 원(7.1%)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자산 380억 원(20.7%), 일반유형자산 231억 원(20.3%), 주민편의 시설 223억 원(6.3%), 사회 기반시설 593억 원(4.4%), 기타비유동자산 14억 원(70.2%)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부채는 29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원(7.2%)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 50억 원(56.2%), 기타비유동부채 48백만 원(1.3%) 증가하고, 장기 차입부채 36억 원(23.4%)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따라서 2019회계연도 말 가평군의 순자산은 전년도 1조 9,690억 원보다 1,408억 원(7.1%) 증가한 2조 1,098억 원이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18년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가-나)	160,003	150,999	9,004	6.0
가. 사업총원가	306,070	278,038	28,032	10.1
나. 사업수익	146,067	127,039	19,028	15.0
II. 관리운영비	65,024	57,285	7,739	13.5
III. 비배분비용	20,222	16,143	4,079	25.3
IV. 비배분수익	15,897	16,526	△629	△3.8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229,352	207,901	21,451	10.3
VI. 일 반 수 익	328,616	284,600	44,016	15.5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99,264	△76,699	△22,565	△29.4

- 가평균의 2019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3,061억 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461억 원을 차감한 1,600억 원이며, 총 11분야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360억 원), “환경보호” (335억 원), “사회복지” (343억 원)이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601억 원과 경비 24억 원, 민간등이전비용 2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운영비(이자비용) 9억 원, 기타비용(자산처분손실,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등) 193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120억 원, 기타수익(전입금수익,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기타비배분수익 등) 39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9회계연도 가평균의 재정운영결과는 △993억 원으로 전년도의 △767억 원보다 226억 원(29.4%)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배분비용 41억 원(25.3%), 관리운영비 77억 원(13.5%), 사업순원가 90억 원(6.0%)이 증가한 반면, 비배분수익이 6억 원(△3.8%)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5 성과보고서

- 가평군은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도시’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계획서’ 와 ‘성과보고서’ 에 ‘비전-전략목표(25개)-정책사업목표(77개)’ 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부서명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	달성률 [(B+C)/A]
계	25	77	173	14	135	24	86.1
기획감사담당관	1	3	10	3	7	0	100.0
자치행정과	1	2	3	0	3	0	100.0
회계과	1	2	2	0	1	1	50.0
일자리경제과	1	5	15	0	12	3	80.0
문화체육과	1	4	7	2	5	0	100.0
관광과	1	3	4	0	4	0	100.0
세정과	1	1	4	0	3	1	75.0
민원지적과	1	2	4	0	2	2	50.0
복지정책과	1	4	4	0	4	0	100.0
행복돌봄과	1	4	8	0	7	1	87.5
건설과	1	3	7	1	0	6	14.3
안전재난과	1	6	10	1	7	2	80.0
환경과	1	6	10	1	7	2	80.0
농업정책과	1	5	19	0	18	1	94.7
산림과	1	3	9	2	4	3	66.7
도시과	1	1	1	0	1	0	100.0
교통과	1	1	4	0	4	0	100.0
허가민원과	1	5	11	0	11	0	100.0
의회사무과	1	1	2	0	2	0	100.0
보건소	1	5	10	2	8	0	100.0
기술기획과	1	3	7	0	7	0	100.0
소득개발과	1	2	7	1	6	0	100.0
상수도사업소	1	1	2	0	2	0	100.0
하수도사업소	1	1	3	0	3	0	100.0
평생교육사업소	1	4	10	1	7	2	80.0

-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86.1%로 전년도 81.2%보다 4.9%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 다만, 성과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작성과 초과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목표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일부 부서의 성과 보고서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오류 입력 사항이 있었던 바, 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육 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 ⑥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1. 채 권

○ 2019회계연도 채권현황은 다음과 같다.

#### 【채 권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발생액	해당연도 상환소멸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합 계	4,050,297	152,696	597,900	3,605,093
일반회계	3,273,126	△106,720	-	3,166,406
공기업특별회계	1,210	-	-	1,210
상수도사업	1,210	-	-	1,210
하수도사업	-	-	-	-
기타특별회계	545,897	131,412	391,309	286,000
의료급여기금	-	-	-	-
주택사업	-	-	-	-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45,897	131,412	391,309	286,000
공영개발사업	-	-	-	-
주차장	-	-	-	-
수질개선	-	-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	-	-	-
기금	230,064	128,004	206,591	151,477
통합관리기금	-	-	-	-
지방채상환기금	-	-	-	-
사회복지기금	230,064	128,004	206,591	151,477
문화예술발전기금	-	-	-	-
식품진흥기금	-	-	-	-
체육진흥기금	-	-	-	-
장학기금	-	-	-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	-	-	-
재난관리기금	-	-	-	-
농업인단체육성기금	-	-	-	-
옥외광고정비기금	-	-	-	-

-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05,093천원으로 일반회계 3,166,406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210천원, 기타특별회계 286,000천원, 기금 151,477천원이다.

## 2. 채무

○ 2019회계연도 채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 【채무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합	계	16,381,250	-	2,134,100	-	14,247,150
일	반 회 계	16,381,250	-	2,134,100	-	14,247,15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	-	-	-
기	타 특 별 회 계	-	-	-	-	-
기	금	-	-	-	-	-

- 채무는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고 있으며, 해당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전년대비 2,134,100천원이 감소한 14,247,150천원이다.

### 【연도별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 천원)

구	분	채무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전	년도	14,247,150	2,643,180	2,643,180	2,643,180	2,643,180	3,674,430
기	이월						
기	준						

- 사업별 해당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다음과 같다.
  - 지방교부세 감액보전(2013.12.13./ 6,000백만원): 2,090,900천원
  - 가평뮤직빌리지조성(2016.06.30./ 5,000백만원): 5,000,000천원
  - 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2016.09.20./ 2,000백만원): 1,625,000천원
  - 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2016.10.26./ 1,000백만원): 843,750천원
  - 상천역세권기반시설조성(2016.10.26./ 2,000백만원): 1,687,500천원
  - 가평뮤직빌리지조성(2016.12.30./ 3,000백만원): 3,000,000천원

### 3. 공유재산

○ 2019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378,661,280	146,721,943	21,810,696	1,503,572,527	
행정 재산	소 계	1,364,641,621	146,535,233	20,619,115	1,490,557,739
	공 용 재 산	246,935,142	76,070,834	4,994,441	318,011,535
	공 공 용 재 산	1,091,920,017	70,464,399	15,624,674	1,146,759,742
	기 업 용 재 산	24,409,091	-	-	24,409,091
	보 존 용 재 산	1,377,371	-	-	1,377,371
일 반 재 산	14,019,659	186,710	1,191,581	13,014,788	

-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대비 124,911,247천원이 증가한 1,503,572,527천원으로, 주요 증가된 내역은 토지 322억 원, 건물 685억 원, 공작물 277억 원 등이다.

### 4. 물품

○ 2019회계연도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건)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711	182	77	816
금 액	10,019,729	2,177,250	1,341,019	10,855,960

- 물품은 전년도대비 836,231천원이 증가한 10,855,960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차량 12대 15억 원,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 및 기타장비 105대 6억 원 등의 신규취득으로 발생된 것이다.

### Ⅲ.

##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 번호	제 목	검사위원	해 당 부 서
1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배 영 식	부서 공통 (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
2	예산전용 과다 발생	배 영 식	부서 공통 (기획감사담당관)
3	채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	신 명 철	세정과 (부서 공통)
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폐지관련 예산처리 부적정	신 명 철	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
5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신 명 철	문화체육과, 농업정책과
6	보조사업비 예산 미편성 및 초과지출	장 상 용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문화체육과)
7	내부거래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결산 불일치	장 상 용	기획감사담당관, 하수도사업소 (관광과, 환경과)
8	예산편제의 일원화	정 진 환	기획감사담당관
9	의회 승인 이월사업에 대한 심사·확정 철저	정 진 환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공통)
10	세입예산편성 소홀	홍 인 수	관광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평생교육사업소
11	기금결산 관련 연도말 조성액 확인 철저	홍 인 수	기획감사담당관
12	과태료 수납률 제고	홍 인 수	민원지적과, 교통과

## 2019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	검사위원	배영식	소관부서	부서 공통 (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
제 목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A)	순세계잉여금(B)	비율(B/A)	비고
2015	542,978	39,367	7.2	
2016	541,149	48,982	9.0	
2017	618,246	54,123	8.7	
2018	640,085	59,157	9.2	
2019	674,878	78,461	11.6	

#### □ 문 제 점

-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78,46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6%를 차지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초과세입금(16,964백만원)과 지출잔액(27,134백만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세입추계의 부적정과 세출예산의 방만한 편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됨.
-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고, 또한 다음 회계년도에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나, 재정운영의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하게 설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 볼 수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가평균의 경우 5개년 간 세출예산의 평균증가율은 4.6%인데 비하여 순세계잉여금은 1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9년도는 예산현액 대비 10%를 넘어서고 있어 예산운용의 특별한 검토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함.

## 2019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2	검사위원	배영식	소관부서	부서 공통 (기획감사담당관)
제 목	예산전용 과다 발생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건 수	금 액	비고
2015	8	165,117	
2016	16	513,091	
2017	6	176,930	
2018	12	556,931	
2019	16	600,695	

#### □ 문 제 점

-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이러한 원칙적인 운영으로 인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예산 전용은 예비비와 달리 사후 보고 절차도 없으므로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과 배치되기도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등 가급적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상기 표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현황’ 을 살펴보면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는 10건 이상 예산 전용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에는 최다 건수인 16건 600,695천원이 발생하였음.
-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한 결과이거나, 예산의 성립 이후 예산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 사료됨.

#### □ 개선 및 권고사항

-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하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 2019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3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세정과 (부서 공통)
제 목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				

### 개선 및 권고사항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미 수납액	사 유 별									
		무 재산	행불	납세 태만	폐업 부도	격리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계	11,746	106	356	5,800	148	6	221	5	550	4,554	
	(100%)	(0.90%)	(3.03%)	(49.38%)	(1.26%)	(0.05%)	(1.88%)	(0.04%)	(4.68%)	(38.77%)	
일반 회계	소 계	11,417	106	356	5,471	148	6	221	5	550	4,554
	지방세	6,823	50	338	1,067	129	6	138	1	550	4,544
	세 외 수입	4,594	56	18	4,404	19	-	83	4	-	10
특별 회계	세 외 수입	329	-	-	329	-	-	-	-	-	-

#### □ 문 제 점

- 경기 불황 및 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수납 금액 중 납세태만이 49%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재산임대료, 도로·하천사용료 등은 사용 대가이며,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매각 대금인데도 불구하고 체납(8,692천원)되고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능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고, 납세 태만 등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됨.
- 각종 임대, 사용료는 사용 대가인 만큼 체납 시 사용허가 재검토 등의 조치가 요구되며, 재활용품 수거 판매 대금은 납부방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이 요구됨.

## 2019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4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
제 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폐지관련 예산처리 부적정				

### 개선 및 권고사항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예산·자금 등 처리 현황

(단위: 원)

2019년 자금현황			2019년도 예산(편성)액	조례 폐지일	자금 일반회계편입	
계	2018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019년 발생이자			편입일자	편입금액
7,121,300	7,096,970	24,330	없음	2019.10.7.	2019.12.6.	7,121,300

#### □ 문 제 점

- 「가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자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아니 하였음.
- 또한, 조례가 폐지된 2019. 10. 7. 현재 2018회계연도 결산잉여금(7,096,970원) 과 2019회계연도 발생이자(7,121,300원) 를 2019회계연도 제3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까지 예산편성 없이 자금만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였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존속기한이 도래된 특별회계 등의 폐지 시 예산편성 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2019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5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농업정책과
제 목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 성과보고서 작성 현황

(단위: 건)

구 분	전략 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달성률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결산 성과보고서	24	74	169	12	113	44	74%
수정 성과보고서	25	77	173	14	135	24	86%

##### ○ 오류입력 현황

(단위: 건)

구 분	전략 목표	정책사업목표		결산 성과보고서			수정 성과보고서			사 유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 달성	초과 달성	달성	미 달성	
문화체육과	1	4	7	2	-	5	2	5	-	오류입력
농업정책과	1	5	19	-	4	15	0	18	1	오류입력

####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2019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나,
- 일부 부서에서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심 부족으로 오류입력 함으로써 86%의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이보다 12%가 적은 달성률 74%로 작성 제출되었음.

#### □ 개 선 및 권 고 사 항

- 성과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작성과 초과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목표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일부 부서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오류 입력함으로써 성과 계획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저하로 유명무실한 결산서가 되지 않도록 교육과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 2019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6	검사위원	장상용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문화체육과)
제 목	보조사업비 예산 미편성 및 초과지출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붙임(2019회계연도 보조금 집행현황)

#### □ 문 제 점

##### ○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 ‘생활체육시설 확충(조종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2019. 11. 26. 경기도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 국고보조금 1,000백만원이 확정내시 통보되었고, 2019. 12. 20. 자금까지 교부되었으나,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 그 결과, 2019회계연도 결산상 예산편성 없이 교부된 국고보조금 1,000 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보건소)

-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과 관련하여 2019. 9. 19.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당초 확정된 사업량보다 축소하여 수요조사 결과를 경기도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9. 9. 25. 국·도비 보조금 2차 변경내시가 통보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교부되었으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음.
- 또한,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보조금 등이 매분기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출예산 집행을 제한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교부되지 않은 보조금(국비 43,000,000원, 도비 2,321,150원)을 집행하여 미수령된 보조금을 대신하여 군비를 초과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기획감사담당관 및 문화체육과에서는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생활체육시설 확충(조종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1,000백만원에 대하여 군비 재원으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 바라며,
-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비 조정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붙임

○ 2019회계연도 보조금 집행현황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차액
				㉠	㉡	㉢=㉠-㉡
문 화 체 육 과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조종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	계	-	1,000,000,000	-	1,000,000,000
		국비	-	1,000,000,000	-	1,000,000,000
		도비	-	-	-	-
		군비	-	-	-	-
보 건 소	국가예방접종사업 (성인예방접종)	계	231,971,000	231,971,000	277,292,150	△45,321,150
		국비	112,985,000	112,985,000	155,985,000	△43,000,000
		도비	39,896,000	39,896,000	42,217,150	△2,321,150
		군비	79,090,000	79,090,000	79,090,000	

## 2019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7	검사위원	장상용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하수도사업소, (관광과, 환경과)
제 목	내부거래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결산 불일치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 내부거래 세입·세출 대응과목 현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 따르면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내부거래 세입·세출 예산편성 대응과목은 3개 유형으로 다음과 같음.

세 입	세 출	비 고
① 전 입 금	① 전 출 금	시·도, 시·군구공통
② 예 수 금	② 예 탁 금	시·도, 시·군·구공통
③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③ 예수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

##### ○ 내부거래 세입·세출 대응과목 착오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세 출				세 입(하수도사업소)			비고(차액)
부 서	회계	과목	금 액	구 분	과목	금 액	
계			14,265,604			14,838,479	572,875
관 광 과	일반	예 수 금 이자상환 705-02	185,000				세출예산 편성 과목 기재 오류
하 수 도 사 업 소	일반	경상전출	2,935,695	수익적 수 입	일 반 회 계 전 입 금	2,564,697	△370,998
환 경 과	특별	경상전출	5,056,253	수익적 수 입	특 별 회 계 전 입 금	4,748,048	△308,205
하 수 도 사 업 소	일반	자본전출	4,592,456	자본적 수 입	일 반 회 계 전 입 금	4,963,454	370,998
환 경 과	특별	자본전출	1,681,200	자본적 수 입	특 별 회 계 전 입 금	2,562,280	881,080

○ 내부거래 세입·세출 대응과목 결산 결과

(단위: 천원)

세출결산				세입결산(하수도사업소)			비고(차액)
부서	회계	과목	금액	구분	과목	금액	
계			14,265,604	계		14,838,479	572,875
소계			7,991,948	소계		7,312,745	△679,203
하수도사업소	일반	경전상출	2,935,695	수익적수입	일반회계전입금	2,564,697	△370,998
환경과	특별	경전상출	5,056,253	수익적수입	특별회계전입금	4,748,048	△308,205
소계			6,737,453	소계		7,525,734	1,252,078
하수도사업소	일반	자본출	4,592,456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	7,525,734	1,252,078
환경과	특별	자본출	1,681,200	자본적수입			

□ 문제점

- (관광과)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상환(뮤직빌리지) 185,000천원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상환(705-04)」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여야 하나, 「예수금 이자상환(705-02)」으로 잘못 편성하였음.
-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각각 받는 전입금을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에 받은 금액과 다르게 세입 편성하였음. 그 결과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14,265,604천원이나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14,838,479천원으로 572,875천원 차액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주고받는 과목과 금액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 2019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8	검사위원	정진환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제 목	<b>예산편제의 일원화</b>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서」의 편제를 살펴보면 ‘Ⅲ. 사업 예산서, Ⅳ. 세출예산서, Ⅴ. 계속비사업조서 및 Ⅵ. 첨부서류’ 중 세입예산 사업명 세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Ⅵ. 첨부서류’ 중 세출예산 사업명 세서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혼재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편제됨.

※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서 편제 현황

목 차	편제 순서
Ⅰ. 재정전망 및 군정방향	
Ⅱ. 예산총괄표	
Ⅲ. 세입예산서	일반회계(부서 직제순), 기타특별회계(부서 직제순)
Ⅳ. 세출예산서	일반회계(부서 직제순), 기타특별회계(부서 직제순)
Ⅴ. 계속비사업조서	일반회계(부서 직제순), 기타특별회계(부서 직제순)
Ⅵ. 첨부서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부서 직제순), 기타특별회계(부서 직제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b>부서(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b>

#### □ 문 제 점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의 구분 인식이 어려움.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편제 순서가 예산서 전반적인 편제 순서와는 달리 기타특별회계를 부서별로 일반회계 말미에 함께 편제하여, 소관 부서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명세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 개 선 및 권 고 사 항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구분 편제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 참여와 자율통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예산의 정보가 알기 쉽고 통일성 있게 편제하기를 권고함.

## 2019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9	검사위원	정진환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공통)
제 목	의회 승인 이월사업에 대한 심사·확정 철저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한 심의와 집행이 요구됨.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에 의회 승인을 받은 명시 이월비는 168건 36,009백만원이며,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 확정은 121건 28,478백만원임.
- 명시이월 경비의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일부지출)을 살펴보면, (의회 승인기준) 총 168건 중 48%에 해당하는 81건을 지출원인행위(일부지출)를 하고 명시이월 함.  
또한, 편성시기별로는 총 168건 중 57%에 달하는 96건이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임.

#### ※ 2019년 『명시이월』 관련 현황

##### 1) 의회 승인 현황(2019년 제3회 추경, 2019. 12. 16. 예산승인)

(단위: 건, 백만원)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8	36,009	164	35,723	4	286

##### 2) 이월 확정 현황(2020. 1. 13.)

(단위: 건, 백만원)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1	28,478	117	28,201	4	277

3) 명시이월 지출원인행위 (건수)현황(2019년 제3회 추경)

(단위: 건)

구 분	의회 승인 시 건수㉠	지출원인행위 건수㉡	비고(㉡/㉠)
계	168	81	48%
일 반 회 계	164	80	49%
기 타 특 별 회 계	4	1	25%

4) 예산편성 시기별 명시이월 (건수)현황(2019년 제3회 추경)

(단위: 건)

구 분	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계	168	70	26	36	36
일 반 회 계	164	68	26	36	34
기 타 특 별 회 계	4	2	-	-	2

□ 문 제 점

○ 의회 승인의 중요성 미인식

- 명시이월 확정 내역은 의회 승인 내역에 비해 49건 7,531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이는 이월 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 요구를 위하여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서 검토 시 관련법령(「지방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가평군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적합한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의회 승인과 확정에 차이를 보이게 되었음.
- 특히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과 지출원인행위(일부 지출)가 된 경비에 대하여는 이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을 하더라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판단하였어야 함.

○ 이월 예산 심사 소홀

- 「가평군재무회계규칙」 제27조에 따라 이월예산의 집행을 위한 이월예산확정을 함에 있어서 예산부서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각 부서에서 제출된 이월요구서를 면밀히 심사하여 의회 승인을 받은 이월예산(명시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하여는 의회가 승인한 이월사업조서와 부서가 요구한 요구서의 내용과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이 할 때에는 그 사유와 타당성을 심사하여 최종 확정하여야 함.

## □ 개선 및 권고사항

### ○ 의회 승인의 중요성 인식

- 이월예산(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중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을 의회승인 받도록 한 것은 자치단체장(군수)이 승인하는 사고이월보다 더욱 엄격한 심사와 결정, 집행이 요구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향후 철저한 검토와 심사 등의 이행이 요구됨.

### ○ 이월예산에 대한 심사 철저

-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 제27조에 따른 이월예산 확정 시에는 의회승인 사항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검토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사유와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기 바람.

### ○ 이월예산의 최소화

- 예산의 이월은 재정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적기 집행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2019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0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관광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평생교육사업소
제 목	세입예산편성 소홀				

### 개선 및 권고사항

#### □ 세외수입 과소 예산 반영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세입과목	예산액	수납액	비 고
계		-	95,599	
관 광 과	공유재산임대료	-	65,729	
환 경 과	공유재산임대료	-	12,973	
농 업 정 책 과	공유재산임대료	-	13,768	
평 생 교 육 사 업 소	공유재산임대료	-	3,129	

#### □ 문 제 점

- 세입예산은 실제 세입전망을 추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추계가 어려울 경우 회기 중 세입이 발생하거나 예측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세입예산에 미편성되어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함.

#### □ 개 선 및 권 고 사 항

- 본예산 및 추가예산 편성할 때 보다 적극적 추계와 정확한 세입 추이 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2019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1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제 목	기금결산 관련 연도말조성액 확인 철저				

### 개선 및 권고사항

#### □ 기금조성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연도말 조성액	기금보관상황			차 액
		예치금	예탁금	용자금	
계	50,745,207	2,588,650	24,264,068		23,892,489
통 합 관 리 기 금	23,892,489		(23,892,489)	(10,896,000)	
지 방 채 상 환 기 금	220,921	37	220,884		
사 회 복 지 기 금	7,087,450	39,348	7,048,102		
문 화 예 술 발 전 기 금	1,591,350	3,563	1,587,787		
식 품 진 흥 기 금	163,012	63,012	100,000		
체 육 진 흥 기 금	1,058,507	148	1,058,359		
가 평 균 장 학 기 금	12,431,131	45,346	12,385,785		
폐기물주변지역기금	309,390	109,390	200,000		
재 난 관 리 기 금	2,305,400	2,305,400			
농업인단체육성기금	1,031,548	22	1,031,526		
옥외광고정비기금	654,009	22,384	631,625		

#### □ 문 제 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합계에서 통합관리기금이 중복 계산되어 24,264,068천원이 과대 계상되어 기금결산에 오류가 발생함.
- 기금운영명세서 이자수입 762,47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중복 및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내부거래 이자가 포함되어 실제 발생한 이자수입 395,735천원보다 366,739천원이 과대 계상되었음.  
(내부거래 예탁금이자수입 306,172천원, 예탁금이자상환 366,739천원, 차액 △60,567천원 발생, 공공예금이자수입 89,563천원)
- 개별기금의 예탁금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관리 기금 간 371,580천원 차이 발생
- 개별기금의 예탁금과 통합관리기금 조성액과의 차이는 일반회계 용자에 따른 이자수입에 내부거래로 인한 허수가 발생

## □ 개선 및 권고사항

-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금으로 실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기금 전체 잔액 총계에서 통합관리기금 연도말 조성액을 제외한 26,481,139천원인 바,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람.
- 개별기금의 예탁금이 통합관리기금 조성액과 일치하도록 결산서 작성
-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있어서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예치금 등) 운용 이자수입만 계상하는 등 내부거래로 인한 이자수입은 제외하여 허수 조정
- 기금의 여유자금을 단순하게 정기예금(11,937,373천원) 및 보통예금(3,647,765천원)에 상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CD, 국·고채 투자, 요구불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기를 권고함.

## 2019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2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민원지적과, 교통과
제 목	<b>과태료 수납률 제고</b>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 민원지적과 과태료 수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비 고
2019년	8,400	105,514	36,856	68,658	34.9%	
2018년	35,500	47,270	36,054	11,216	76.3%	

##### ○ 교통과 과태료 수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비 고
2019년	466,495	824,512	240,390	524,760	28.5%	※ 결손액 59,362
2018년	191,523	208,396	88,096	119,976	42.3%	※ 결손액 324

#### □ 문 제 점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급증하여 미납자가 증가함.

#### □ 개선 및 권고사항

- 미수납 사유가 오로지 납세태만으로 나타나므로 관리소홀 등 장기간 방치하여 결손처분 등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으로 현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함.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	검사위원	배영식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공통
제 목	연례 · 반복적 집행잔액 과다발생사업 조치 소홀				

### 개선 및 권고사항

#### □ 최근 2년간 반복적 30%이상 예산잔액 발생사업 현황

(단위: 원)

부 서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내역	비고
기획감사담당관 외 15개 부서	2,173,854,106	865,517,080	1,308,337,026	“불임 내역 참조”	

#### □ 문 제 점

-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바, 예산의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축소, 중지 등의 사유로 계획되었던 사업이 변경되거나 불가능 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최근 2년간 동일사업의 집행잔액 발생률이 30%이상 발생하여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특히 매년 연례 ·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 정책 및 평가부서에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군 전반에 걸쳐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 평가 및 심사분석과 피드백을 통하여 주요사업들에 대한 정상추진 또는 부진 여부의 정확한 진단을 실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할 것임.

[조치(계획)결과] 따로 불임

□ [연번 1 - 불입]

○ 최근 2년간 반복적 30%이상 예산잔액 발생사업

연번	회계연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현 액	기
		계			2,173,854,106	86
1	2017	기 획 감 사 실	제안제도 운영	303-01 포상금	5,000,000	
	2018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제도 운영	303-01 포상금	2,500,000	
2	2017	기 획 감 사 실	청렴역량강화	201-02 공공운영비	720,000	
	2018	기획감사담당관	청렴역량강화	201-02 공공운영비	200,000	
3	2017	자 치 행 정 과	후생복지 시책지원	202-04 국제화여비	170,000,000	9
	2018	자 치 행 정 과	후생복지 시책지원	202-04 국제화여비	50,000,000	1
4	2017	경 제 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150,000,000	1
	2018	일 자 리 경 제 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8,000,000	
5	2017	경 제 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57,000	
	2018	일 자 리 경 제 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	
6	2017	민 원 봉 사 과	지적재조사사업(보조)	201-01 사무관리비	137,667,000	5
	2018	민 원 지 적 과	지적재조사사업(보조)	201-01 사무관리비	171,112,000	8
7	2017	민 원 봉 사 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01-02 공공운영비	900,000	
	2018	민 원 지 적 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01-02 공공운영비	635,000	

연번	회계연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현 액	기
8	2017	민 원 봉 사 과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201-02 공공운영비	600,000	
	2018	민 원 지 적 과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00,000	
9	2017	민 원 봉 사 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401-01 시설비	1,200,000	
	2018	민 원 지 적 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401-01 시설비	1,200,000	
10	2017	희 망 복 지 실	재해구호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000,000	
	2018	복 지 정 책 과	재해구호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000,000	
11	2017	건 설 교 통 과	자전거도로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0,000,000	2
	2018	건 설 과	자전거도로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0,000,000	2
12	2017	안 전 재 난 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9,950,000	
	2018	안 전 재 난 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6,950,000	
13	2017	안 전 재 난 과	민방위시설장비	201-02 공공운영비	47,600,000	3
	2018	안 전 재 난 과	민방위시설장비	201-02 공공운영비	47,600,000	3
14	2017	안 전 재 난 과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0,800,000	
	2018	안 전 재 난 과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2,550,000	

연번	회계연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현 액	기
15	2017	안 전 재 난 과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4,120,000	2
	2018	안 전 재 난 과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201-02 공공운영비	74,120,000	2
16	2017	안 전 재 난 과	풍수해 보험 지원	307-06 보험금	9,032,000	
	2018	안 전 재 난 과	풍수해 보험 지원	307-06 보험금	8,000,000	
17	2017	안 전 재 난 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0,000,000	
	2018	안 전 재 난 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8,500,000	
18	2017	환 경 과	청소관리	401-01 시설비	20,000,000	
	2018	환 경 과	청소관리	401-01 시설비	15,000,000	
19	2017	환 경 과	수질오염총량 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0	
	2018	환 경 과	수질오염총량 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	
20	2017	환 경 과	나눔장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3,800,000	
	2018	환 경 과	나눔장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4,640,000	
21	2017	환 경 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01-11 기타보상금	500,000	
	2018	환 경 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01-11 기타보상금	1,000,000	

연번	회계연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현 액	기
22	2017	환 경 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	301-11 기타보상금	1,500,000	
	2018	환 경 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	301-11 기타보상금	900,000	
23	2017	농 업 정 책 과	농산물직거래추진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	
	2018	농 업 정 책 과	농산물직거래추진	201-03 행사운영비	10,000,000	
24	2017	농 업 정 책 과	농업경영인육성	201-01 사무관리비	6,500,000	
	2018	농 업 정 책 과	농업경영인육성	201-01 사무관리비	9,500,000	
25	2017	농 업 정 책 과	친환경 농업인 육성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800,000	
	2018	농 업 정 책 과	친환경 농업인 육성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00,000	
26	2017	농 업 정 책 과	공동브랜드홍보	201-03 행사운영비	30,000,000	
	2018	농 업 정 책 과	공동브랜드홍보	201-03 행사운영비	30,000,000	
27	2017	농 업 정 책 과	국유재산 사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2018	농 업 정 책 과	국유재산 사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28	2017	농 업 정 책 과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행정비	201-01 사무관리비	490,000	
	2018	농 업 정 책 과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행정비	201-01 사무관리비	2,520,000	

연번	회계연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현 액	기
29	2017	농 업 정 책 과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행정비	202-01 국내여비	13,040,000	
	2018	농 업 정 책 과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행정비	202-01 국내여비	5,512,000	
30	2017	농 업 정 책 과	저수지 준설	401-01 시설비	30,000,000	
	2018	농 업 정 책 과	저수지 준설	401-01 시설비	30,000,000	
31	2017	농 업 정 책 과	공동브랜드육성지원및명품화	201-01 사무관리비	1,120,000	
	2018	농 업 정 책 과	공동브랜드육성지원및명품화	201-01 사무관리비	1,120,000	
32	2017	산 림 과	산불방지대책(군비)	201-02 공공운영비	9,065,000	
	2018	산 림 과	산불방지대책(군비)	201-02 공공운영비	31,080,000	2
33	2017	산 림 과	아름다운나무 관리사업	401-01 시설비	9,000,000	
	2018	산 림 과	아름다운나무 관리사업	401-01 시설비	15,000,000	
34	2017	산 림 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401-03 시설부대비	27,118,848	1
	2018	산 림 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401-03 시설부대비	12,927,258	
35	2017	산 림 과	일반병해충 방제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	
	2018	산 림 과	일반병해충 방제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	
36	2017	산 림 과	보호수 관리	401-03 시설부대비	1,000,000	
	2018	산 림 과	보호수 관리	401-03 시설부대비	1,000,000	

연번	회계연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현 액	기
37	2017	산 림 과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201-02 공공운영비	15,200,000	
	2018	산 림 과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201-02 공공운영비	15,200,000	
38	2017	산 림 과	숲길 관리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	
	2018	산 림 과	숲길 관리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	
39	2017	산 림 과	명지산 군립공원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40,000,000	
	2018	산 림 과	명지산 군립공원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235,000,000	13
40	2017	산 림 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 해충예찰방제단)(자본)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412,000	
	2018	산 림 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 해충예찰방제단)(자본)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80,000	
41	2017	산 림 과	산림 수해복구	206-01 재료비	5,000,000	
	2018	산 림 과	산림 수해복구	206-01 재료비	3,000,000	
42	2017	허 가 민 원 과	식품안전사고 예방	301-11 기타보상금	5,000,000	
	2018	허 가 민 원 과	식품안전사고 예방	301-11 기타보상금	3,000,000	
43	2017	보 건 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400,000	
	2018	보 건 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060,000	

연번	회계연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현 액	기
44	2017	보 건 소	B형주산기감염예방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1,740,000	
	2018	보 건 소	B형주산기감염예방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1,632,000	
45	2017	보 건 소	국가결핵예방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48,661,000	2
	2018	보 건 소	국가결핵예방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19,633,000	
46	2017	보 건 소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401-02 감리비	16,000,000	
	2018	보 건 소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자체)	401-02 감리비	16,000,000	
47	2017	보 건 소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500,000	
	2018	보 건 소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187,000	
48	2017	기 술 기 획 과	가평농업전문인력육성	301-11 기타보상금	3,000,000	
	2018	기 술 기 획 과	가평농업전문인력육성	301-11 기타보상금	1,500,000	
49	2017	소 득 개 발 과	특용작물 명품화 시범	406-01 기타자본이전	5,000,000	
	2018	소 득 개 발 과	특용작물 명품화 시범	406-01 기타자본이전	5,000,000	
50	2017	하 수 도 사 업 소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관리	207-01 연구용역비	30,000,000	
	2018	하 수 도 사 업 소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관리	207-01 연구용역비	30,000,000	

연번	회계연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현 액	가
51	2017	평생교육사업소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0,000,000	
	2018	평생교육사업소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0,000,000	
52	2017	평생교육사업소	가평군 장학관 건립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0	
	2018	평생교육사업소	가평군 장학관 건립	401-03 시설부대비	13,903,000	
53	2017	평생교육사업소	가평군 장학관 건립	401-02 감리비	75,000,000	
	2018	평생교육사업소	가평군 장학관 건립	401-02 감리비	75,000,000	2

1	연례반복적 집행잔액 과다발생사업 조치 소홀	검사위원명	배영식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기획감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제3회 추경예산편성시, 각 부서별 회계담당자 회의(2019.10.17.)에서 매년 연례·반복적 불용예산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집행률이 70%미만인 자체사업은 조정 편성하였음.</li> <li>○ 또한 2020년 본예산, 제1회 추경 예산편성시에도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별 지출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였음.</li> <li>○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완료 여부,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시기에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li> <li>○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30%이상 예산잔액이 발생한 사업(제안제도 운영, 청렴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음.</li> </ul>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선진지 해외배낭연수의 경우 총3팀이 신청하였으나, 경기도 감사 일정의 사유로 여행시기가 11월 이후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경기도 감사일정이 다시 한번 변경됨에 따라 2팀이 여행허가 신청을 취소하여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하였음.</li> <li>○ 2019년 선진지 해외배낭연수의 경우 한 팀 안의 구성원이 각각 다른 직급으로 구성되도록 하여 총 1팀이 신청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집행잔액이 59% 발생하였음.</li> <li>○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40백만원으로 축소 편성하였고,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진행 과정을 여러 번 점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li> </ul>
일자리 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99%이상 집행완료 하였으며 2018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시설비로 작년도 사유 미발생으로 미추진</li> <li>○ 향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li> </ul>

<p>민원지적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조사사업(보조)(201-01 사무관리비) 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2개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2017년도 집행잔액 예산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완료 했으며 2018년도 집행잔액 예산은 이월하여 2019년도에 집행함.</li> <li>○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및 개발부담금 부과관리(공공운영비) 예산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추경시에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음.</li> <li>○ 건전한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시설비)는 부동산중개업소 옥외간판을 대집행해야 하는 사유 발생시 집행하는 예산으로 예비적 성격이 강함.</li> </ul>
<p>복지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 상황발생시 이재민의 의료·방역·급식·물자취급 등에 참여요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하고자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성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li> <li>○ 2017·2018년도의 경우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향후 매년도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의 잔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음.</li> </ul>
<p>건설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예상 및 계획과 다르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삭감하여 필요한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li> </ul>
<p>안전재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사유를 철저히 분석 후 감액 편성하여 적절한 예산액을 편성함.</li> <li>○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보조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미집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함.</li> <li>○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은 예측되지 않은 재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업비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li> </ul>
<p>환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관리-시설비는 수해·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임. 따라서 장마철 집중 호우 시 수해 및 방치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집행하는 예산이므로 집행액이 바뀌는 특성상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 함.</li> <li>○ 다른 사업 예산은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정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li> </ul>

농업정책과	○ 지난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미집행사유 발생시나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이 변경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감액 조정 등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음.
산림과	○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철저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 하고 신속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감액 편성하여 예산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허가민원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상금 선지급 후 해당 시군에 상환금을 요청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액을 추경에 삭감 등 조정이 불가함.
보건소	○ 예산 편성 후 사업예산의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미 집행액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 향후 사업의 최근 예산집행 실태를 분석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겠음.
기술기획과	○ 3년간 예산집행 실태를 분석한 후 정확한 예산 편성을 위하여 예산액 50%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잔액발생률이 절반 이상 줄었음. ○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예산잔액 30%이상 발생 과목에 대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 집행 실태에 맞게 감액 편성하고, 예산 편성 후 사업 계획의 변경 및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소득개발과	○ 현재 소득개발과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지식재산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은 천연추출물이 포함된 가축사료첨가제 등 발명특허 7건, 실용신안건 2건으로 총 9건이며 지적재산권 등록료 등 2020년 제1회 추경으로 소득작목기술 1,200,000원으로 책정하여 감액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하여 조치함.

<p>하수도 사업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관리사업에 3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절차상의 이유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음.</li> <li>○ 2018년 해당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으나 용역비 산출 단계에서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37% 발생하였음.</li> <li>○ 향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진행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li> </ul>
<p>평생교육 사업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행사운영비는 ‘고3 수험생을 위한 행사’ 예산으로 ‘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로 인해 수시 면접기간과 행사일이 겹쳐 기존 계획대비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18년 수능 이후 신청자 감소 및 고3 수험생의 관심부족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19년에는 그 동안의 참여율 저조에 대한 분석으로 고3 수험생의 관심분야 등의 행사 및 전문적 행사기관의 대행을 통해 참여율을 높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겠음.</li> <li>○ 가평군 장학관 건립에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는 예산과목이며, 장학관 건립 시 감독공무원에 여비 등으로 지출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향후 다른 공사 등의 시설부대비 편성 시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음. 감리비는 공사 준공 후 지출되는 예산과목 특성이 있어 2017회계연도에 편성된 감리비를 장학관이 준공된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음. 추후 불용액 감소를 위하여 정확한 공사금액(실시설계 용역 등) 산출 후 예산을 편성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li> </ul>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2	검사위원	배영식, 홍인수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외 7개부서
제 목	세외수입 세입예산편성 소홀				

### 개선 및 권고사항

#### □ 세외수입 과대·과소 예산반영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현액	수납액	세입예산 반영		세입과목	비고
기획감사담당관 외 7개 부서	3,406,123	3,521,379	과대반영	693,766	“붙임 내역 참조”	
			과소반영	573,018		

#### □ 문 제 점

- 세입예산은 실제 세입전망을 추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추계가 어려울 경우 회기 중 세입이 발생하거나 예측이 가능한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 2018년도 세외수입에 대하여 본예산부터 3회추경까지 예산편성이 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외 7개 부서에는 세입예산이 미편성 되었거나, 계수조정 없이 결산(과대편성: 693,966천원, 과소편성: 573,018천원) 되어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보다 적극적 추계와 정확한 세입 추이 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징수된 세입원이 예산에 미반영 되어 불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 [연번 2 - 붙임]

○ 2018년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세입과목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현액	수납액	세입예산 반 영
계		3,406,126	-	3,406,126	3,521,379	과대: 693,766 과소: 573,018
기획감사담당관	그 외 수 입	-	-	-	31,896	△31,896
민원지적과	과 징 금	30,000	-	30,000	78,005	△48,005
관 광 과	공유재산임대료	-	-	-	80,946	△80,946
	기 타 사 용 료	2,201,126	-	2,201,126	1,719,810	481,316
	그 외 수 입	50,000	-	50,000	120,122	△70,122
안전재난과	하 천 사 용 료	175,000	-	175,000	249,455	△74,455
	시·도 유 재 산 매 각 수 입 금	-	-	-	86,744	△86,744
	불용품매각대	-	-	-	31,300	△31,300
환 경 과	재활용품수거관 매 수 입	250,000	-	250,000	327,082	△77,082
도 시 과	시·도 유 재 산 매 각 수 입 금	-	-	-	60,045	△60,045
상수도사업소	징수교부금수입	300,000	-	300,000	87,550	212,450
평생교육사업소	징수교부금수입	-	-	-	12,423	△12,423

2	세외수입 세입예산편성 소홀	검사위원명	배영식, 홍인수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기획감사 담당관	<p>○ 추경예산 및 본예산 편성시, 각 부서별 회계담당자 실무회의(2019.9.6.)를 개최하여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강조하였으며, 향후에도 결산서와 예산서를 대조 검토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입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겠음.</p> <p>※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발생 예측이 명확하지 않아 세입예상이 어려우며, 특히 세입의 발생시점과 예산편성 시점에 따라 반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12건 중 7건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p>
민원지적과	<p>○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이 2018년 12월에 77,800천원 수납이 되어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에 조정이 힘든 부분이 있었음. 세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하도록 조치 노력하겠음.</p>
관광과	<p>○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예산에 대하여 추가 경정예산 및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였음.</p>
안전재난과	<p>○ 세입예산 편성 시 지난 연도별 세입 추이 분석 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음.</p> <p>○ 추후에도 세입 추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수입이 예산에 미반영 되어 불용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음.</p>
환경과	<p>○ 세입 추계를 가급적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정한 과목에 세입 처리하겠음.</p>

<p>도시과</p>	<p>○ 토지환매대금에 대한 세외수입은 수입발생이 임의적이고, 예상이 불명확하나 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검토로 최대한 세입을 추계하고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p>
<p>상수도 사업소</p>	<p>○ 상기 세입예산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써 실제 교부금이 세외수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수시로 협의하여 우리군 추경 시 세외수입 계수조정하여 예산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p>
<p>평생교육 사업소</p>	<p>○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징수교부금 수입 6,15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64천원을 증액한 6,218천원을 반영하였음.</p> <p>○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5,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부담금 징수 추이를 반영하여 최대한 정확한 징수교부금 수입을 예산에 경정 반영토록 하겠음.</p>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3	검사위원	배영식	소관부서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제 목	<b>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b>				

### 개선 및 권고사항

#### 현황

- 붙임(2017~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 문제점

-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잔액을 말하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 중 세입추계를 잘못된 초과세입금, 수립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 등에 대하여는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 등 방만한 예산운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예산판단에 의한 계획수립 및 사업별 심사분석을 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 [연번 3 - 붙임]

○ 2017~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명	연도별	예산현액	결산액			잉여금세부내역			
			세입	세출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예산현액 대비율
계	2017	55,871	55,333	45,803	9,530	6,911	-	2,619	4.7
	2018	63,241	63,934	45,889	18,045	7,793	-	10,252	16.2
상수도 특별회계	2017	15,020	14,501	9,410	5,091	3,740	-	1,351	8.9
	2018	24,850	24,708	13,393	11,314	5,155	-	6,159	24.7
하수도 특별회계	2017	40,850	40,832	36,392	4,439	3,171	-	1,268	3.1
	2018	38,391	39,226	32,492	6,731	2,639	-	4,092	10.6

○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명	순세계 잉여금	초과세입금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			
			집행잔액			
			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계	10,252	693	9,559	4,850	1,365	3,342
상수도 특별회계	6,150	△141	6,301	2,371	588	3,342
하수도 특별회계	4,092	835	3,257	2,479	778	-

3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검사위원명	배영식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상수도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좀 더 면밀한 수입추계를 통해 오차를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 시 세밀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li> <li>○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게 예산 불용이 예상 될 경우 추가경정을 통해 계수를 조정하겠음.</li> </ul>
하수도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사업소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초과세입금 835백만원, 집행잔액 3,257백만원으로 초과세입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수입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좀 더 정확하게 수입을 추계하고,</li> <li>○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중에도 소요예산을 수시로 점검, 사업의 계획 변동 등을 감안하여 집행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용의 적정을 기하겠음.</li> </ul>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4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환경과
제 목	예산총계주의 원칙 미준수				

### 개선 및 권고사항

#### □ 「모음과 나눔매장」 운영현황

- 운영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위 치: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75-1 / 매장면적: 46.08㎡
- 운영내용: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교환하거나 기증받아 판매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 이용도모
- 운영비용 및 수익금 발생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운영비용					수익금 발생내역		비고
	소 계	인건비	물 품 구입비	공 공 운영비	건 물 임대료	금 액	사용내역	
2018년	34,297	23,703	393	1,801	8,400	11,709	지정기부	
2017년	27,811	18,546	704	1,961	6,600	9,015	세외수입	
2016년	28,189	16,626	2,397	2,566	6,600	12,627	세외수입	

#### □ 문 제 점

-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와 같은 법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수입대체 경비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모음과 나눔매장」의 수익금을 2017년까지는 세외수입으로 예산에 편입하여 처리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하여 지정기부하고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모음과 나눔매장」의 수익금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세입 예산에 편입하여 처리하기 바람
- 아울러, 수익금을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직접 기탁하여 지정기부하기 위해서는 「모음과 나눔매장」 운영주체를 민간단체로 하거나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보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4	예산총계주의 원칙 미준수	검사위원명	신명철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환경과	○ 「모음과 나눔매장」의 수익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세입 예산에 편입하여 처리하였음.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5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외 14개부서
제 목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 개선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8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붙임과 같은 결과를 달성하였음

#### □ 문 제 점

- 지표관리의 경우 특별한 노력 없이 자동 달성이 가능하도록 목표치를 설정한 일부 지표가 있었고,
- 성과보고서 지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100%미만)와 목표를 과도하게 초과달성(130%)한 35건에 대해, 성과지표 또는 목표치의 적절성을 점검하거나 향후 성과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져 다음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하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대부분의 부서의 성과보고서 작성은 관심 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요구됨
- 초과달성이나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하고 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 [연번 5 - 불입]

○ 성과 달성 실적

(단위: 개/백만원)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5	66	149	7	114	28	447,217

○ 원인분석 대상 지표

(단위: 개/백만원)

부 서 명	성과목표			비고
	계	초과달성(130%)	미달성(100%미만)	
계	35	7	28	
기획감사담당관	2		2	원인분석 철저
민원지적과	3	1	2	"
행복돌봄과	1		1	"
세정과	1		1	"
관광과	1	1		"
건설과	5		5	"
환경과	4		4	"
농업정책과	1		1	"
도시과	1	1		"
교통과	2		2	"
허가민원과	1		1	"
보건소	7	2	5	"
기술기획과	2	2		"
하수도사업소	1		1	"
평생교육사업소	3		3	"

5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 개선	검사위원명	신명철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기획감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계획서(2017. 10. 18. 작성)와 성과보고서(2019. 1. 16. 작성) 작성 시점(15개월) 차이로 성과지표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성과지표 목표의 과다·과소달성되지 않도록 부서별 회계담당자 실무회의(2019.9.6.)를 개최하였음.</li> <li>○ 향후 부서평가 지표와 성과계획서 지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서평가 지표 확정이후 성과계획서의 적정지표를 도출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li> </ul>
민원지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과달성 성과지표인 “개발부담금 징수율”은 2019년도 개발부담금 징수 건수 목표치 20건으로 변경하여 실적치 19건으로 목표율 95%로 달성하였으며, 미달성 성과지표인 “인감증명 발급대비 본인서명사실 발급실적” 계속적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업무 처리기간 단축율은 2019년 목표치 하향조정으로 100%달성하였으며 향후 성과계획의 적적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li> </ul>
행복돌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가 요보호아동에 대한 예산집행실적으로 요보호사유인 입양 및 가정 위탁종결 등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li> <li>○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 또는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li> </ul>
세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의 실적 및 관련 세부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했고 2020년 본예산 편성 시부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수립 등의 성과계획서를 엄밀히 분석하여 작성했음.</li> <li>○ 성과분석 시 성과 미달성 또는 초과 달성인 경우 원인 분석을 통해 목표수준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반영 추진했음.</li> </ul>
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계획서 수립시 초과달성이나 미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목표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음.</li> </ul>

건설과	○ 2018년도 건설과의 성과목표 및 실적은 아래와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과지표</th> <th colspan="3">전년도</th> <th colspan="3">당해년도</th> </tr> <tr> <th>목표</th> <th>실적</th> <th>달성율</th> <th>목표</th> <th>실적</th> <th>달성율</th> </tr> </thead> <tbody> <tr> <td>주민불편사항처리대비 사전관찰 처리율</td> <td>55.4</td> <td>78.91</td> <td>142</td> <td>57.4</td> <td>60</td> <td>105</td> </tr> <tr> <td>관내도로 정비율</td> <td>90</td> <td>77</td> <td>86</td> <td>90</td> <td>77</td> <td>86</td> </tr> <tr> <td>군도 정비사업 추진율</td> <td>75</td> <td>53</td> <td>71</td> <td>80</td> <td>43.12</td> <td>54</td> </tr> <tr> <td>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율</td> <td>75</td> <td>41</td> <td>55</td> <td>80</td> <td>52.75</td> <td>66</td> </tr> <tr> <td>국유재산(도로) 임대료 징수율</td> <td>95.4</td> <td>95.4</td> <td>100</td> <td>98.4</td> <td>90.15</td> <td>92</td> </tr> <tr> <td>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율</td> <td>80</td> <td>75</td> <td>88</td> <td>82</td> <td>83</td> <td>101</td> </tr> </tbody> </table>	성과지표	전년도			당해년도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주민불편사항처리대비 사전관찰 처리율	55.4	78.91	142	57.4	60	105	관내도로 정비율	90	77	86	90	77	86	군도 정비사업 추진율	75	53	71	80	43.12	54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율	75	41	55	80	52.75	66	국유재산(도로) 임대료 징수율	95.4	95.4	100	98.4	90.15	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율	80	75	88	82	83	101
	성과지표		전년도			당해년도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주민불편사항처리대비 사전관찰 처리율	55.4	78.91	142	57.4	60	105																																																	
	관내도로 정비율	90	77	86	90	77	86																																																	
	군도 정비사업 추진율	75	53	71	80	43.12	54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율	75	41	55	80	52.75	66																																																	
국유재산(도로) 임대료 징수율	95.4	95.4	100	98.4	90.15	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율	80	75	88	82	83	101																																																		
○ 과반수의 지표에서 전년도 목표대비 달성율이 저조함에도 목표를 일정 부분 상향조정하여 목표치 설정이 부적절하였음.																																																								
○ 직원 교육을 통해 향후 성과목표 책정 시 관심을 가지고 사전원인분석을 통해 적정치를 반영하도록 조치예정																																																								
환경과	○ 지표 성향, 목표에 맞게 관심을 가지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농업정책과	○ 성과분석 시 성과미달성 또는 초과달성인 경우 원인 분석을 통해 목표 수준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재정 운용에 활용토록 할 계획임. ○ 성과계획서 수립부터 정책사업과 성과지표의 연계성·적정성, 실적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계획 시부터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도시과	○ 해당 사업은 제거대상 불법 광고물의 수량이 예측 불가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2019년 성과목표 설정시 2018년 보다 증가시켜 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조정하였음. ※ 2018년 목표(10,000건), 실적(14,493건) 달성률 145% 2019년 목표(14,000건), 실적(14,603건) 달성률 104%																																																							
교통과	○ [목표 100%] 행복택시운영실적 93% - 미달성(100% 미만): 주민수요를 기반으로 예산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으나, 마을전담 택시기사 선정 어려움(택시기사의 기피)으로 일부 마을의 사업추진의 미진함 점이 있었음. 향후, 주민수요 및 인프라(전담 기사) 확보 등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목표 100%] 무단방치차량 사건 처리율 77% -미달성(100% 미만): 방치차량의 소유주 및 사용자 조사 및 수사에 따른 절차적 시간적 문제로 사건 처리율이 신속히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조사 및 수사를 통하여 타 관할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 신속히 이첩하여 처리율을 개선하도록 하겠음.																																																							

허가민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에 10개의 성과지표 중 1개를 미달성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달성 지표: 산지전용지 행정대집행 복구실적</li> </ul> </li> <li>○ 미달성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산지전용지 행정대집행 복구실적의 경우 복구 대상 결정이후 개인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허가를 득하거나 자진 복구하는 경우가 있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고, 외부요인으로 좌우 되는 지표로서 향후 노력도를 반영한 지표를 재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함.</li> </ul>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의 실적을 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실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li> </ul>
기술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분석 시 원인 분석을 통해 목표수준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토록 할 계획임.</li> <li>○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성과계획서 수립부터 정책사업과 성과지표의 연계성·적정성, 실적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음.</li> </ul>
하수도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계획서 수립시 초과달성이나 미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목표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음.</li> </ul>
평생교육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달성 성과목표는 「제2차 가평군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설치」, 「독서문화증진을 위한 군민 1인당 독서량」 이었으며,</li> <li>○ 2019년에는 성과계획서를 엄밀히 설정·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10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음. 향후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 경정 시 성과계획서를 수정하고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li> </ul>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6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행복돌봄과, 안전재난과, 산림과, 보건소
제 목	부적절한 예산 전용 지양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 예산전용 내역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부 서	전용 현황		감액	증액
행복돌봄과 외 3개 부서	“붙임 참고” (총 5건)	343,072	53,570	53,570

####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이로 인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49조의 전용제도를 운영하며, 전용제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며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그러나 행복돌봄과 외 3개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4.4.) 및 제2회(9.20.)추가경정예산에 편성 가능했음에도 그 시기를 놓쳐 전용한 사례가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토록 한 원칙을 준수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함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 [연번 6 - 붙임]

○ 예산전용내역

		과 목		예산액	감액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계		총 5건		343,072	53,5
행복돌봄과	보육·가족 및 여성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3,000	8,0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행사운영비	7,000	
안전재난과	재난방재 · 민방위	전입병사 안보문화 탐방 및 체험(보조)	기타보상금	25,000	25,0
		전입병사 안보문화 탐방 및 체험(보조)	행사운영비		
안전재난과	재난방재 · 민방위	재난대응훈련(안전한국훈련) (보조)	행사실비보상금	4,214	1,8
		재난대응훈련(안전한국훈련) (보조)	사무관리비	1,500	
산림과	임업·산촌	산림 수해복구	사무관리비	17,500	16,0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 병해충예찰방재단)(경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1,848	
보건소	보건의료	보건행정서비스지원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	120,850	2,7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22,160	

6	부적절한 예산 전용 지양	검사위원명	신명철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기획감사 담당관	<p>○ 예산편성시 정확한 지출과목 설정을 위하여 회계담당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전용 요청시 정확한 지출과목 설정을 하지 못한 사유를 분석하여 사업계획 작성시 정확한 지출과목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최근 4년 간 예산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2016년</th> <th colspan="2">2017년</th> <th colspan="2">2018년</th> <th colspan="2">2019년</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건</th> <th>금액</th> <th>건</th> <th>금액</th> <th>건</th> <th>금액</th> <th>건</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예산전용</td> <td>16</td> <td>513,091</td> <td>8</td> <td>179,160</td> <td>6</td> <td>176,960</td> <td>5</td> <td>53,570</td> <td></td> </tr> <tr> <td>증감현황</td> <td>-</td> <td>-</td> <td>△8</td> <td>△333,931</td> <td>△2</td> <td>△2,200</td> <td>△1</td> <td>△123,390</td> <td></td> </tr> </tbody> </table> <p>※ 목그룹(통계목, 편성목)은 세출경비의 성질별 분류를 의미하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에 따라 동일 세부사업의 목그룹이 변경된 것임.</p> <p>○ 향후에도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목적과 예산 성립시기를 고려하여 예산 전용을 지양하도록 하겠음.</p>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예산전용	16	513,091	8	179,160	6	176,960	5	53,570		증감현황	-	-	△8	△333,931	△2	△2,200	△1	△123,39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예산전용	16	513,091	8	179,160	6	176,960	5	53,570																															
증감현황	-	-	△8	△333,931	△2	△2,200	△1	△123,390																															
행복돌봄과	<p>○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직업체험, 별자리체험캠프, 겨울가족캠프) 추가 실시에 따라 긴급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p> <p>○ 향후 사업의 계획 변동 등을 감안하여 집행계획을 미리 전망하고 분석하여 필요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겠음.</p>																																						
안전재난과	<p>○ 재난대응훈련(안전한국훈련)(보조)사업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훈련준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무전기 임대비용, 훈련용품 등 추가적 비용의 발생으로 원활한 훈련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하였음.</p> <p>○ 사업의 계획 변경이나 사업 진행 여건 등 변동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최대한 추가경정 예산 시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음.</p>																																						

<p>산림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 예산 전용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라 긴급히 방제인력을 투입하여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였으며, 산림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li> <li>○ 향후, 예산 편성 시 관련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겠음</li> </ul>
<p>보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음.</li> </ul>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7	검사위원	신명철, 정진구	소관부서	세정과
제 목	지방세 행정기관 착오 세입 최소화 방안 마련				

### 개선 및 권고사항

#### □ 지방세 행정기관 착오 환급액

(단위: 천원)

환급액 합 계	2018년 부과분에 대한 환급액					지난연도 부과분에 대한 환급액
	소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 세	
318,600	47,441	170	38,742	632	7,897	271,159

#### □ 문 제 점

-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세입 환급액이 발생되어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대책이 요구됨
-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적용세율 착오, 과세표준 착오, 감면대상 부과 등 사례 별 발생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 개선 및 권고사항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 환급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 원인별 분석과 대책이 필요함
- 2018회계연도 지방세 행정기관 착오 세입 환급액이 318,600천원이며, 이중 지난연도 부과분에 대한 환급액 271,159천원인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지난 연도 부과분에 대한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생 즉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환급으로 민원발생 감소 및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하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7	지방세 행정기관 착오 세입 최소화 방안 마련	검사위원명	신명철, 정진구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세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세목별 실무교육(총9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함.</li> <li>○ 지방세 업무 연찬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세법 지식을 공유하여 행정기관 착오발생 환급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함.</li> <li>※ 참고 1. 자동차세 주환급 사유 :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후 과세 등 2. 지방소득세 주환급 사유 : 국세경정으로 인한 환급 등</li> <li>○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환급안내문을 주1회 발송하고, 전화상담 등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함.</li> </ul>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8	검사위원	장상용	소관부서	회계과, 자치행정과, 기술기획과
제 목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개선 및 권고사항

#### □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단위: 원, 개)

구 분	수	가격(원)	비고
기계기구	6	19,918,220	
무체재산	4,714	2,035,116,840	

#### □ 문 제 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 중 기계와 기구는 기관차·객차 등의 궤도차량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이며,
- 무체재산은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말하고 있으나,
- 기계와 기구는 기술기획과의 세륜기, 비료살포기 등 6건을, 무체재산은 자치행정과의 한글2010, 보조기억매체시스템 등의 사용권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공유재산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공유재산 등록이 불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에서 제외하고 관리하시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8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검사위원명	장상용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회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과-28021호(2019.11.20.)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비하여 공유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을 처분하였으며, 향후 회계처리 시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오류 등재가 없도록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li> <li>- 처분내용: 무체재산(4,597건), 기계기구(6건), 입목죽(91건), 공작물(949건) 등</li> </ul>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근거: 자치행정과-16422(2019. 6. 27.)호</li> <li>○ 공유재산 처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재산: 무체재산으로 등록된 Auto Cad(설계용 프로그램) 외 36개 소프트웨어</li> <li>- 처분재산 수: 4,585개</li> <li>- 처분사유: 가평균 자체 제작 소프트웨어가 아닌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공유재산 중 무체재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li> </ul> </li> </ul>
기술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공유재산 등록이 불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에서 제외하고 관리하겠습니다.</li> </ul>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9	검사위원	장상용	소관부서	도시과
제 목	<b>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필요</b>				

### 개선 및 권고사항

#### □ 특별회계 조례 설치현황

조 례 명	제 정 근 거	법률의 위임	존속기한	비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	없음	없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다만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예외로 하고 있음.
- 기존 설치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거나 존속기한이 2018.12.31.을 초과하여 정해진 특별회계는 2018.12.31.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8년 말까지 관련 조치 미 이행 시 「지방재정법」 제9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 □ 문 제 점

- 위 조례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 「가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설치및관리) 제1항의 “지방자치법 준용”은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말하나, 117조를 준용한다고 오기 명시하였음.
- 또한 조례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서 “법제47조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하였지만 법 제47조제3항규정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바 「가평군 군계획조례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특별회계에 대해 그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거나 향후 관련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 정비를 권고함.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9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필요	검사위원명	장상용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도시과	○ 2019년 본예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하여 특별회계의 운영 필요성이 없어 2019. 10. 7. 해당 조례를 폐지하였음.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0	검사위원	장상용	소관부서	관광과, 안전재난과, 농업정책과
제 목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 개선 및 권고사항

#### □ 사업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고
계	4건	1,468,717	1,468,717	
관 광 과	농어촌민박활성화	96,000	96,000	
안전재난과	북한강자라섬정비사업	204,717	204,717	이월사업
농업정책과	저수지준설	30,000	30,000	이월사업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138,000	1,138,000	이월사업

#### □ 문 제 점

- 사업추진과정에서 축소(중단)된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은 추경 시 감액 편성하여 타 긴급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불용되었으며,
-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등 3건의 사업은 이월된 사업으로써 사고(명시) 이월 후 사업이 중단(포기)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지속성,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10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검사위원명	장상용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농업정책과 (농촌관광팀) ※前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민박사업자간 사업 추진 방식의 이견으로 인하여 사업이 추진이 중단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음.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예산 삭감 등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li> </ul>
안전재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라섬의 현재 형태를 유지하면서 북한강 자라섬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하천구역 배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하천구역을 제척하더라도 이에 따른 축제 및 매립 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장기간 사업시행이 불가피함. 만약 법적 적용 가능한 계획을 반영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자라섬 고유 형태를 저해하고, 경제적 부담과 장기간 공사가 되는 취약성을 내포하기에, 2017년 12월 현안사항 보고회(소통의 날)와 의원 월례회의 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였음. 이후 지속적인 과업 수행으로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되어 현 진행 단계에서 중지하고 정산 조치함.</li> <li>○ 이월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예산 집행 시 철저하고 지속적인 확인·점검 과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li> </ul>
건설과 (기반조성팀) ※前농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수지준설사업은 봄 가뭄에 따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17년 7월 공사계약 후 저수지에 물을 뺀 후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담수된 저수지의 물을 뺄 경우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2018년 11월 사업을 취소하여 사업비 반납 예정임.</li> <li>○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은 수도법 개정으로 사업부지가 공장설립제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2018. 7. 1. 부로 안전재난과로 업무 이관되어 안전재난과에서 2019. 2회 추경에서 반납액을 예산 편성하여 반납예정임.</li> <li>○ 사업 추진 전에 철저한 검토를 하여 이월사업의 발생률을 최소화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파악하여 이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li> <li>○ 향후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각종 사업 추진시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철저한 현장 확인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설계 변경 발생 및 과다증액 설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li> </ul>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1	검사위원	장상용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 평생교육사업소, 보건소
제 목	정수물품 관리 소홀				

### 개선 및 권고사항

#### □ 물품관리 현황

(단위: 건)

품 명	정 수	당해연도 증감		보유 수	비 고
		취득	처분		
버 스	2			3	정수초과
일 반 승 용 차	42	4	2	55	정수초과
냉 방 기	114			7	정수책정수 과다
실 체 현 미 경	8	5		9	정수초과
구 내 방 송 장 치	4		1	5	정수초과 및 취득누락
구 급 차				1	취득누락
고 소 작 업 차				1	취득누락

※ 구내방송장치 취득 누락 : 한석봉도서관

#### □ 문 제 점

- 정수물품 관리대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정수승인을 받은 후 물품을 구입하여야 함
- 버스, 일반승용차 등 4종은 정수를 초과하여 취득하였고,
- 냉방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수로 관리,
- 구급차, 고소작업차는 취득 누락하였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에 따라 정수 승인 조정을 하시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심의 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대한 정수물품 반영 여부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11	정수물품 관리 소홀	검사위원명	장상용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기획감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정수물품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편성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음.</li> <li>- 2020년 본예산 편성시 부서별 회계담당자 실무회의 개최(2019. 9. 6)</li> </ul>
회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2019.12.13.)하여 실제 정수물품 보유 현황 및 2020년 정수책정 신청 내역을 반영하여 새올 물품관리시스템 상 정수책정내역 및 물품보유현황에 대해 수정입력 진행(2019. 12. ~ 2020. 3.) 중에 있으며,</li> <li>○ 향후 정수물품 취득 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정수물품 반영 누락이 없도록 하겠음.</li> </ul>
평생교육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한석봉도서관 건축 당시, 방송설비의 관급자재(부품)로 구입된 후 조립되어 설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석봉도서관 준공 시 구내방송장치의 정수승인이 누락됨. 이에 정수승인 부서에 2020년 2월 정수승인 요청하였음.</li> </ul>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정수물품 관리를 위해 누락 또는 조정하여야 할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음.</li> </ul>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2	검사위원	정진구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외 9개부서
제 목	공사계약 설계 규정금액 준수 및 과다설계 지양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불임(수의계약 후 과다변경으로 규정금액 초과, 당초 대비 20%이상 과다증액 설계)

####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금액은 1인 견적으로 수의 계약 할 수 있고 그 이상일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음
-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는 이유는 상호 비교하여 저가 견적을 제출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기할 수 있음인데, 수의금액 견적을 받아 계약한 후 물량증가를 이유로 과다한 설계변경이 되어 최종금액이 규정금액을 초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 또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계로 인하여 과다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함

#### □ 개선 및 권고사항

- 각종 사업 설계 시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계약 후 특별한 사안 이외에는 설계변경(증액)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따로 불임

□ [연번 12 - 붙임]

○ 수의계약 후 과다변경으로 규정금액 초과

(단위: 원)

번호	담당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증액금액	변경금액
1	관 광 과	산장관광지 산장1교 재가설공사(전기)	2018.01.16. ~ 10.11.	19,015,000	15,131,430	34,146,430
2	도 시 과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 석면철거공사	2018.02.23. ~ 08.21.	16,863,000	8,519,490	25,382,490
3	농업정책과	상색리 마을회관 앞 용수로 설치공사	2018.05.30. ~ 11.16.	15,984,000	7,309,480	23,293,480
4	건 설 과	개곡2리 종점 교량 확장공사	2018.05.09. ~ 09.25.	17,038,000	6,540,850	23,578,850

○ 당초 대비 20%이상 과다증액 설계

(단위: 원)

번호	담당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증액금액	변경금액
1	산 림 과	2018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2권역)	2018.02.28. ~ 03.31.	48,795,000	10,125,010	58,920,010
2	산 림 과	2018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1권역,2차)	2018.02.28. ~ 03.31.	45,214,000	17,589,100	62,803,100
3	도 시 과	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 외1개소 석면철거공사	2018.02.23. ~ 08.21.	42,161,000	19,291,000	61,452,000
4	건 설 과	설악면 설곡리 비치 도로포장 공사	2018.05.03. ~ 05.31.	15,475,000	3,519,010	18,994,010
5	일 자 리 경 제 과	상면 봉수리 공장밀집지역 배수로 및 사면보호공사	2018.06.21. ~ 07.19.	16,640,000	4,691,200	21,331,200
6	농업정책과	화악1리 양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18.08.29. ~ 09.26.	14,136,000	5,521,400	19,657,400
7	농업정책과	연하리 마을회관 옆 배수로 정비공사	2018.11.14. ~ 12.12.	12,811,000	4,755,830	17,566,830
8	허기민원과	덕현리 마을안길 우수관로 설치공사	2018.03.02. ~ 05.30.	25,013,000	18,686,450	43,699,450
9	건 설 과	화곡2리 물퐁마을 교행차로 설치공사	2018.03.26. ~ 05.24.	30,777,710	9,093,140	39,870,850
10	안전재난과	소법리 화악천 보안보 하천정비공사	2018.04.06. ~ 10.11.	42,224,200	16,965,160	59,189,360
11	안전재난과	개곡리 가평천 개곡보 하천 정비공사	2018.04.05. ~ 06.03.	50,486,140	17,761,960	68,248,100
13	산 림 과	2018년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공사	2018.05.29. ~ 06.27.	24,624,500	6,072,570	30,697,070
14	안전재난과	행현2리 배수로정비공사	2018.08.10. ~ 12.12.	37,791,410	20,138,930	57,930,340
15	도 시 과	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4호 선외1) 개설공사(교통광장)	2018.10.01. ~ 11.24.	29,026,080	8,056,580	37,082,660
16	행복돌봄과	가평군 보훈회관 신축공사 (2차분)	2018.04.09. ~ 12.16.	610,656,900	106,231,730	716,888,630
17	건 설 과	군도8호선(수리재)도로확포장 공사(1차분)	2018.05.14. ~ 2019.05.13.	756,798,170	284,331,830	1,041,130,000
18	문화체육과	조종국민센터 수영장 천정 교체공사	2018.06.22. ~ 2019.10.19.	134,598,400	56,849,860	191,448,260

12	공사계약 설계 규정금액 준수 및 과다설계 지양	검사위원명	정진구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일자리 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면 봉수리 공장밀집지역 배수로 및 사면보호공사 추진 중 수목 추가 굴취, 초류종자살포 추가, 벤치플롭관 규격변경, 집수정 추가설치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변경한 사항임.</li> <li>○ 향후 본 계약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li> </ul>
산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경우 설계 및 시공기간에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며,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상 매년 3월 30일이 지나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제할 수 없으므로, 시공기간에 발생한 감염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특성상 설계변경에 따라 당초 대비(20%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었음.</li> <li>○ 향후 사업 설계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li> </ul>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 시 현장여건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향후 공사 추진 시 과도한 설계변경(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감독하겠음.</li> </ul>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과다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청취 후 이를 반영하고 철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 작성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음.</li> </ul>

농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각종 사업 추진시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철저한 현장 확인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설계 변경 발생 및 과다증액 설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li> </ul>
허가민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한 덕현리 우수관로 설치공사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하매설물(우수관로)의 변경으로 공사비가 30%이상 증액되었으므로 향후 실시설계 시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다증액되는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li> </ul>
안전재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법리 화악천 보안보 하천정비공사는 보를 정비하는 공사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사구배를 완만히 하고 소단을 설치하였음. 노후된 콘크리트와 신규 구조물간의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천공개수 증가함(4개소).</li> <li>○ 개곡리 가평천 개곡보 하천정비공사는 개곡보 하상을 정비하는 공사로, 하천내 자연형성된 하천 퇴적층을 작업로로 이용하여 가도 설치단가를 절감하고, 사석 시공 후 공극을 콘크리트 채움으로 공법변경 시공하여 이탈방지 등의 예측 가능한 하자를 최소화하고, 가물막이 마대축조 공법으로 변경하여 외수유입을 차단하였음.</li> <li>○ 행현2리 배수로정비공사는 침수예방을 통해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배수관 설치 공사으로써, 기존 우수박스 위치 및 높이가 설계와 상이하여 시험터파기 실시 결과 흡관 접합을 위하여 우수박스 상단에 사각맨홀(1500x1500x2900) 추가 설치하고, 흡관 부설시 기존 수로관 간섭되어 수로관 재시공 및 아스콘 포장 요청으로 전면 포장 실시함. 흡관과 사각맨홀이 설계상으로는 접합 불가하여 사각맨홀 위치 변경하고, 누락된 미끄럼방지 포장을 시공하였음.</li> <li>○ 사업 설계 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공사 계약 시 견적서를 제출 받은 업체들을 비교·분석하여 계약을 의뢰하고, 해당 인근 주민들과 마을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li> </ul>

<p>복지정책과 ※前행복돌봄과</p>	<p>○ 당초 가평군 보훈회관 신축 설계 및 공사 발주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평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건물위치 변경 및 방풍실 위치 조정</li> <li>-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 지적사항에 따라 엘리베이터 규격을 당초 13인승에서 17인승으로 변경(휠체어 사용자의 편의 도모)</li> <li>- 보훈단체의 건의에 따라 외벽 마감재, 단열재, 지붕재, 외관변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액되게 되었음.</li> </ul> <p>○ 향후 사업추진 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의견수렴 등 면밀한 검토로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음</p>
<p>문화체육과</p>	<p>○ 조중국민센터 수영장 천정 교체공사 추진 중 해당 시설 위탁사인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내부 검토한 결과 필요 공정이 추가 된 사업임.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설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음.</p>
<p>관광과</p>	<p>○ 각종 사업 설계 시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철저히 검토·분석하여 실제 시공 시 설계변경(증액)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p>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3	검사위원	정진구	소관부서	건설과
제 목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 개선 및 권고사항

#### □ 국·공유지 무단점용 사용 현황

관리부서	국·공유지 현황			무단사용 면적 (㎡)	비고
	지 번	면적(㎡)	소유자		
건설과	가평읍 금대리 936	2,017	국토교통부	1	
건설과	가평읍 금대리 613-5	230	가평군	30	
건설과	가평읍 금대리 554-7	15	가평군	2	

#### □ 문 제 점

- 가평읍 금대리 936일원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개인 숙박시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 국유지를 사유화하였음에도 상당기간 방치하였음
- 가평읍 금대리 554-7, 613-5 지방도 391호선 상에 불법시설물(펜스설치, 조경수 식재, 자재적치)을 무단으로 설치 사용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방치하였음
- 민원 발생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사후 조치를 하였으나 「국유재산법」 제82조,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적기에 하지 않았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공유재산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단 점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에 「국유재산법」 제82조, 「도로법」 제72조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하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13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검사위원명	정진구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건설과	<p>○ 2018년도 당시 원상회복통보 후 기간내 원상복구완료를 하여 변상금 부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향후 민원발생시 사전통지 후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를 동시에 행정처분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p>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4	검사위원	정진구	소관부서	보건소
제 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철저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집행잔액(반환금)			반환금 예산편성시기	반 환 금 집 행 일	비고
	계	국비	도비			
국가암검진(2017년)	1,198	949	249	-	'18.12.17.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2017년)	6,151	4,295	1,856	'18. 제3회 추경	-	
				'19. 제1회 추경	'19.04.03.	

#### □ 문 제 점

- 「국가암검진사업」 반환금을 2018년도 예산에 미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된 다른 사업(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 반환금)의 예산에서 집행함에 따라
- 2018년도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 반환금은 예산액이 부족하여 2018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불용액 4,953천원)하였으며, 다음연도인 2019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회계업무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업무로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 등을 강화하여 업무미숙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14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철저	검사위원명	정진구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직원 등 대상으로 회계관련 실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업무미숙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li> <li>○ 회계업무 처리 절차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사전 연찬하고 회계 교육 등 적극참여 하도록 하겠음.</li> </ul>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5	검사위원	정진구	소관부서	행복돌봄과
제 목	지방보조사업자 관리 감독 철저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지방보조사업자인 가평군시각장애인연합회장의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4분기 보조금 지급 제재 결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문화활동 참여사업비(은빛축제 1,650천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1,740천원) 미교부로 인해 회원들의 불이익 초래

#### □ 문 제 점

- 지방보조사업자 대표의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가평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9조에 의한 4분기 보조금 지급 제재는 적절하였으나,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문화활동사업(은빛축제,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액의 세부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 요인(부정사용)이 발생하였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환수 조치하기 바람
-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평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1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 감독 철저	검사위원명	정진구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행복돌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사업비 반납, 4분기 보조금 지급 제재 등 행정처분에 대해 2018년도에 완료처리 하였음.</li> <li>○ 향후 추가요인(부정사용) 발생 시 적의조치 할 계획이며, 지방보조사업 정산검사 등 지방보조사업자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li> </ul>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6	검사위원	정진구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도시과
제 목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방치				

### 개선 및 권고사항

####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순세계잉여금)	비고
1,740,679	-	1,740,679	전액미집행

#### □ 문 제 점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있는 1,740,679천원 중 지역 및 도시 부문 1,656,927천원은 군부대이전사업으로 2017년 사업이 종료되었고, 산업단지 부문 83,752천원은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로 2018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어 불용하였음
- 이로 인해 전체적인 세출예산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사업 없이 방치되어 있음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당시에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잔액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개선·권고하였으나, 별도의 조례나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가평균 도시공사 설립 계획’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가평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2조에 의한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해당사업의 추진사업이 전무하다면 특별회계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막대한 예산을 방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16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방치	검사위원명	정진구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기획감사 담당관	<p>○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과 “친환경주거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존치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면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p> <hr/> <p style="text-align: center;">-친환경주거단지 조성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접근성을 고려한 읍·면별 공유지 선정(각 1개소)</li> <li>○ 사  업  량: 단독주택지 30호 미만, 부지는 약 500~600㎡/호 미만</li> <li>○ 사업기간: 2019. ~ 2028.</li> <li>○ 사  업  비: 800백만원(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사업비는 해당부지의 기반시설 및 구조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li> </ul> </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관외거주자, 유관기관 종사자, 장기복무 및 세대군인 등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li> </ul> </li> </ul>
일자리 경제과	<p>○ 2020년 입지타당성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p>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가평군에서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2028 가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 도시개발 전략과제로 「친환경 전원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li> <li>○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및 젊은 층의 거주주택에 대한 수요 및 주거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유희 공유지를 활용하여 청정가평 이미지에 맞는 친환경 전원주거단지 조성 및 분양을 통해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li> <li>○ 본 사업은 「가평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허가, 대지조성, 마케팅 및 분양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자주적인 경영을 통하여 능률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제6조에 따라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하여야 하므로 친환경 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종료시점인 2028년까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함.</li> </ul>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7	검사위원	정진구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도시과, 농업정책과
제 목	성인지 예산 집행을 저조				

### 개선 및 권고사항

#### □ 성인지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부 서	성인지 예산현액	성인지예산 집행액	집행률	비고
일 자 리 경 제 과	4,807,019	431,871	8.9	
문 화 체 육 과	14,440,805	5,547,064	38.4	
도 시 과	8,855,531	4,186,461	47.2	
농 업 정 책 과	96,058	54,253	56.4	

#### □ 문 제 점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고, 남녀간 차이를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예산의 배분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제도이나,
- 성인지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단순 성비 맞추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내용이 많아 성별영향평가사업과 자치단체특화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함

#### □ 개 선 및 권 고 사 항

- 성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성인지 사업의 인식제고로 형식적인 내용보다 실질적인 성평등 사업 발굴이 필요함
-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교육, 문화, 체육 관련 사업들에 성별 영향 분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취지대로 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 사업 활성화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17	성인지 예산 집행률 저조	검사위원명	정진구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일자리 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조성사업이 19년 말에 착공을 하여 현재 터파기 및 천공 등 토목 공사를 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 대비 2/23일 현재 공정률은 약 7.5%임. 21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고, 부진했던 계속비이월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음.</li> <li>○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고객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디자인과 설계를 통해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고객만족의 핵심인 창업경제타운의 명칭 결정, 건축물의 운영 및 홍보방식은 추후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결정하고 진행 할 예정임.</li> </ul>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 중 여성 이용시설인 청평호반문화체육시설센터 건립 사업 추진 중 폭한·혹서·우기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향후 철저한 영향분석을 통해 사업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음.</li> </ul>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업은 공공의 목적으로 재즈문화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인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li> </ul>
농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 예산의 편성 취지대로 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의 활성화와 예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 사업: 2개사업(농업인자녀학자금, 귀농귀촌박람회 참가)</li> </ul> </li> </ul>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8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회계과
제 목	부가가치세 신고 부적정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 가평뮤직빌리지 조성 결산현황

(단위: 천원)

년 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015년	17,300,000	17,300,000	13,992,106	3,307,894	
2016년	10,500,000	13,807,894	445,443	13,362,451	
2017년	3,332,000	16,694,451	7,443,118	9,251,333	
2018년	4,148,000	12,367,333	12,134,028	233,305	

##### ○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공제 내역

(단위: 천원)

총매입공급가액	매입세액	공제세액	불공제세액	비고
17,502,299	1,750,299	480,113	1,270,186	

##### ○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단위: 건, 천원)

기분	소 계	지연발급	지연수취	공급가액	비고
2018. 1기 확정	461	8	453	91,438	
2018. 2기 확정	268	10	258	52,478	

#### □ 문 제 점

- 가평뮤직빌리지는 부동산 임대와 공연장, 스튜디오, 연습장 대관 및 숙박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건축 등 조성비 및 유지관리비 등 관련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가능함에도 27.4%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72.6%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2018년도에만 최대 1,270,186천원을 과소 환급 받았음
-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전액 가산세는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대 계산하였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정 계산 및 부가가치세 과소하게 환급받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2018년 귀속분을 포함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시 정밀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동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것을 권고함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18	부가가치세 신고 부적정	검사위원명	홍인수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회계과	<p>○ 2019. 9. 5.: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 국세청 신고</p> <p>○ 2019. 10. 25. ~ 2019. 12. 3.: 중부지방국세청 요구자료 제출</p> <p>○ 2019. 12. 11.: 중부지방국세청 현지 조사</p> <p>○ 2019. 12. 3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결과 통보 [남양주세무서 법인납세과-4307호(2019.12.31.)]</p> <p>○ 2019. 12. 3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금 세외수입 불입 [회계과-32397호(2019.12.31.)]</p> <p><b>※ 환급내역</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백만원)</span></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청구일</th> <th style="width: 15%;">과세기간</th> <th style="width: 15%;">청구세액</th> <th style="width: 15%;">인용세액</th> <th style="width: 40%;">검토결과</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624</td> <td style="text-align: center;">999</td>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경정청구  일부인용  (625 거부)   2019. 12. 30.  농협 57674000051  환급처리 완료 </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2019.9.5.</td> <td style="text-align: center;">2018.2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532</td> <td style="text-align: center;">98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8.1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518</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7.2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262</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7.1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302</td> <td style="text-align: center;">0.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6.2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body> </table> <p>- 가 산 금: 6,497,340원</p> <p>- <b>환급총액: 1,006,470,390원정 (금일십억육백사십칠만삼백구십원정)</b></p>	청구일	과세기간	청구세액	인용세액	검토결과	계		1,624	999	경정청구 일부인용 (625 거부)  2019. 12. 30. 농협 57674000051 환급처리 완료	2019.9.5.	2018.2기	532	982	2018.1기	518	10	2017.2기	262	4	2017.1기	302	0.3	2016.2기	7	3
청구일	과세기간	청구세액	인용세액	검토결과																							
계		1,624	999	경정청구 일부인용 (625 거부)  2019. 12. 30. 농협 57674000051 환급처리 완료																							
2019.9.5.	2018.2기	532	982																								
	2018.1기	518	10																								
	2017.2기	262	4																								
	2017.1기	302	0.3																								
	2016.2기	7	3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9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제 목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관리 소홀				

### 개선 및 권고사항

#### □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예산액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계	236,100	233,850	2,250	
(주) 우 리 솔	186,600	186,600		
심비영농법인	13,000	10,750	2,250	실적보고서 등 없음
조 흥 식 품	20,500	20,500		실적보고서 등 없음
다 미 소	16,000	16,000		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 □ 문 제 점

-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 즉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 및 검토가 소홀함

#### □ 개 선 및 권 고 사 항

- 자부담인 부가가치세 지원 교부 여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류로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당초 사업계획서와 실제 보조금 및 자부담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관계 규정 등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행할 것을 권고함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19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관리 소홀	검사위원명	홍인수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17754(2019.6.7.)호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급한 건에 대하여는 농업정책과-25094(2019.8.14.)호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반납 조치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20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세정과
제 목	<b>지난년도수입 수납률 제고</b>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 지방세수입 보통세 지난년도 수입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비고
2018년	850,000	4,706,753	584,609	1,121,950	3,000,194	12.4%	
2017년	2,200,000	7,717,201	2,224,806	2,532,261	2,960,134	28.8%	

##### ○ 미수납 사유

(단위 : 천원)

구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자금압박	기 타	비고
2018년	2,420	269,437	850,000	18,849	1,817,860	41,628	
2017년	11,849	259,889	473,654	-	-	2,214,743	

#### □ 문 제 점

- 당해연도 지방세(보통세) 수납률은 92.0%로 양호하나 과년도(보통세)수입은 12.4%로 현저하게 낮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난년도(보통세)수입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 및 자금압박 등으로 나타나므로 관리소홀 등으로 장기간 방치 및 결손처분 등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으로 현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 함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20	지난년도수입 수납률 제고	검사위원명	홍인수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세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금액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관리 소홀 등으로 장기간 방치 및 결손처분을 지양하였고,</li> <li>○ 체납처분 기동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매주 2회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난년도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함.</li> </ul>